

# 목 차

1. 서면질문·답변서	708
<b>【 제1차 본회의 】</b>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21
<b>【 제2차 본회의 】</b>	
3.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23
4.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71
5.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관철을위한성명서채택의건	778
6. 평창군의회의원합동연수에관한동의	784
<b>【 제3차 본회의 】</b>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88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15
9.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23
10.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32
1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62
12.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68
13.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79
<b>【 제4차 본회의 】</b>	
14. 국도31호선(장평~평창간)4차선 확.포장에관한건의안	911
1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15
1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2
17.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28
18.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39
1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43
20. 봉평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947
21. 영·평·정행정협의회규약안	949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 수 현 의 6 인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대상자	평창군수 (가정복지과장)		
<p><u>질문요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치 경위와 사업장 위치 선정 과정은 ?</li> <li>2. 사업장 위치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관련서류 일체 사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li> <li>나. 심의회의록, 심의의결조서, 심의조서(찬반서명표기) 끝.</li> </ol> </li> </ol>			

# 질문. 서면 답변서

질문	이수현 의원의 6인	답변	평창군수 (가정복지과장)
회의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결특위 ('95. 12. 14)		
<p>&lt; 질문요지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치경위와 사업장 위치선정 과정은 ?</li> <li>2. 사업장 위치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관련서류 일체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li> <li>나. 심의회의록, 심의의결조서, 심의조서(찬반서명표기). 끝.</li> </ul> </li> </ol>			

<p>&lt; 답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예결특위 위원장 이수현 의원님이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치 경위와 사업장 위치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li> <li>○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유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10. 19일 강원도지사의 회관 신축사업 신청에 저희 평창군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경로당 24개소.노인회관1개소), 신청 2개건중 종합복지회관 1동 500평 규모의 국비 1,069백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춘천시로 결정 되어 다시 노인복지회관 180평 규모의 군비 포함 374백만원을 신축비로 신청('95. 11. 20일) 하였습니다.</li> </ul> </li> <li>○ '95. 11. 29일 강원도지사의 '95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회관 신축 신규 지정에 따라 저희 평창군에 노인종합복지회관(180평. 374백만원)이 유치 되었음을 말씀드리며,</li> <li>○ 참고로 '96년도에 건축비로 도비 200백만원이 추가지원이 예상됩니다.</li> </ul>
--

## < 답 변 >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사업장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 '95. 10. 19일 강원도지사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신청전은 '96년도 예산확보 추진사업 물량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증도에 '95년도 사업량으로 변경되어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95. 11. 30 재무과와 협의 부지 300평 규모의 균유지를 조사한바 평창읍과 장평지역의 부지가 있어 2개소에 대한 토지현황과 위치선정에 따른 장단점을 조사하여 '95. 12. 7일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장평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위치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사본 요구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평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조례 제295호)에 의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회의체로서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써 행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고 있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군수)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토록 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반면 심의의결조서(찬반서명표기) 사본 요구 사항은 위원회 구성원(위원)의 개인 의사가 나타나 있는 사항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과 심의회의록, 심의의결조서는 별첨과 같이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의안 번호	제1995 - 53호	
상	연월일	1995. 12. 07.
정	회 수	제 1 회

## 평창군정조정위원회부의안

제 목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안)
-----	------------------------

제 안 자 : 가 정 복 지 과 장

# 노인종합회관건립부지선정(안)

## 1. 부지선정의 목적

- 현재 평창군내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 24개소. 노인회관 1개소(평창읍)를 운영하고 있음.
- 노인복지 기능보강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문화, 교양, 스포츠 시설을 완비
- 경로풍토 조성과 소외 노인들을 위한 삶의 의지와 보람 제공

## 2. 시설계획

- 위 치 : 관내 지역중 노인이용율이 많고 노인이용시설(경로당)이 편중됨이 없는 위치 및 관리에 용이한 위치
- 면 적 : 부지 300평 ( 990㎡ ) . 건물 180평( 594㎡ )
- 사 업 비
  - 부 지 : 군비부담 (가급적 균유지)
  - 건축물 : 374,220천원
  - 재원별 : 국비187,110천원(50%). 도비93,555천원(25%). 군비93,555천원(25%)

## 3. 노인인구 현황('95. 10.31기준)

- 전체 총인구수 : 50,201명
- 65세이상 인구 : 4,781명 ( 전체 인구의 9.5% )

○ 읍면별 노인 인구현황 ( 65세이상 )

(단위 : 명)

구분	계	65 ~ 70세이하	71 ~ 99세이하	100세이상	경로당수
계	4,781	1,868	2,910	3	24개소
평창	1,123	446	677		5
미탄	272	127	145		4
방림	425	163	260	2	4
대화	756	330	425	1	4
봉평	474	209	265		2
용평	371	121	250		1
진부	957	346	611		1
도암	403	126	277		3

○ 지역별 노인인구수 및 경로당수

- 대화포함 이남지역 노인인구및 경로당수 : 2,576명 . 경로당 17개소  
(평창.미탄.방림.대화) → 1개소당 평균 151명
- 봉평포함 이북지역 노인인구및 경로당수 : 2,205명(△371). 경로당 7개소  
(봉평.용평.진부.도암) → 1개소당 평균 315명

○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노인회관 현황

- 위 치 : 평창읍 하리 147-5번지
- 면 적 : 대지 180평 . 건평 58.26평
- 구 조 :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 건축년도및 건축비 : '92년도 완공 ( 80,000천원 소요 )
- 이용현황 : 평창읍 노인회와 함께 노인교실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음

#### 4. 부지선정계획(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 (복지회관 피로연장 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읍 중리 331-1외 2필지 (구 문화회관 철거 부지)</li> </ul>
가능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평 내외</li> <li>· 평 창 군</li> <li>· 준 농림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평 내외</li> <li>· 평 창 군</li> <li>·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li> </ul>
토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주차장으로 활용중 (포장)</li> <li>· 건축물 2동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평1리 마을회관(벽돌스레 트 32평) : 참고로 활용중</li> <li>- 메밀가루정미소(벽돌스레트 54평) : 마을소유를 임대하 여 사용중 (봉평메밀정미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대지로 현재 공터</li> <li>· 건축물 2동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회관(전물유족회.상이군 경협회) : 사용 (2층,40평)</li> <li>- 개인주택(조립식스레트33평) : 가게및주택사용 (신승덕)</li> </ul> </li> <li>· 개인소유 토지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 번 : 332번지 40평</li> <li>- 소유자 : 중리 박영도</li> </ul> </li> </ul>
예 상 문 제 점 및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평보건지소 이전계획과 연계 검토 : 건물위치 및 보상등</li> <li>· 건축물 철거 보상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동: 마을회관.공장(정미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철거 보상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동 : 보훈회관 (2층,40평) 개인주택 (33평)</li> </ul> </li> <li>· 개인소유 332번지 토지보상금 소요(40평)</li> </ul>







## 5. 위치에 따른 장단점

구 분	위 치	장 점	단 점
제 1 안	용평면 잠평리 380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많은 노인 이용 용이함 . 대화.봉평.용평.진부및 도암까지 이용:2,835명</li> <li>2. 용평 보건지소와 연계 노인치료에 도움이 됨</li> <li>3. 체육공원과 연계 이용에 용이하여 노인건강에 도 움이 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부서와 먼거리로 관리에 애로및 비용이 많이 소요 예상</li> <li>2. 마을소유 공장및 회관 건물 보상요구 예상</li> </ol>
제 2 안	평창읍 중리 33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부서와 인근위치로 관리용이및 관리비 절감</li> <li>2. 인근의 노인들에게 이용 이 편리함 . 평창.미탄.방림.대화 : 2,576명 이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지 확보 지난 예상 : 개인소유 332번지</li> <li>2. 등기소 관사및 삼이군경 사무실 철거 보상금소요</li> <li>3. 평창읍에 위치한 평창군 노인회관 이용 저조예상 ('92. 80,000천원 건축)</li> <li>4. 지역에 편중된 노인시설 . 대화 이남지방 경로당 수 : 17개소(대화포함) . 봉평 이북지방 경로당 수 : 7개소</li> </ol>

##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부지선정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제 1995 - 53 호	의결년월일	1995. 12. 07.
의안명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의결주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선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노인복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문화, 교양, 스포츠시설을 설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p>가. 시설물 설치지역은 노인 이용율이 많고 노인이용시설(경로당)이 편중됨이 없는 위치 및 관리에 용이한 위치를 선정코자함.</p> <p>○ 면적 : 부지 300평, 건축물 180평</p> <p>○ 사업비 : 374,220천원 (국비 187,110천원, 도비 93,555천원 군비 93,555천원)</p> <p style="text-align: right;">※ 추후 도비 2억 지원 받을 계획임.</p> <p>나. 제 1 안 응평면 장평리 380번지 지역과 제 2 안 평창읍 하리 331-1번지 지역이 균유지이므로 건립코자함. (별지 부지선정안)</p> <p>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활용방안으로 노인교실 운영, 노인치료 상담, 노인기능강화훈련, 교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실내 체육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함. (별지 활용방안)</p> <p>라. 운영비등은 국도비지원 확보 및 군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임</p>		

# 평창군정조정심의회의회의록

- 심의일시 : '95. 12 .7(목) 09:10~09:50
- 장 소 : 군청 상황실 (2층)
- 참 석 : 총 20 명중 17명 참석
- 제 목 :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안)
- 회의내용

발 언 자	토 의 내 용
부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안)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li> <li>○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상정한것이므로 심의후 말씀 하여 주시고 사후 관리운영및 이용율등을 고려하시고</li> <li>○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li> </ul>
가정복지계장	○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 잠평리 지역의 부지가 건축할수 있는 면적이 가능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 회관은 2층으로 180평이므로 부지면적삼(300평) 가능합니다.
부 군 수	○ 문화회관 건축부지 현황은 ?
가정복지계장	○ 현재 보훈회관 1동, 개인주택 1동및 개인부지 40평이 있으며 부지를 전부 확보하면 240평정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 체육시설등의 시설방안이 있는데 운영비등의 대책은?
가정복지계장	○ 노인복지시설로 국도비및 군비를 확보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노인교실운영및 자원봉사원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노인이용을 제고 대책(노인운송등)은?
가정복지과장	○ 노인승차권을 노인교통수담으로 '96년도에 지급하므로 충분하며 분기및 월별 프로그램운영등 최대한 많은 노인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 잠평 지역은 위치상 산업용 시설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발 언 자	토 의 내 용
사회진흥과장	○ 장평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장평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 장평 지역 부지내의 공장 철거 방안은?
가정복지계장	○ 장평리 주민들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부 군 수	○ 그러면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명으로 하시겠습니까? → 동의 및 서명실시
부 군 수	○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출석위원 17명중 제 1 안은 9명이 서명하셨고 제 2 안은 7명이 서명 하셨으며 1명은 반납하시는것으로 하셨으므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제 1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9
----------	----

발의년월일 : 1995年 11月 日

발 의 자 : 이 수 현 의원  
외 6 人

## □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기간은 1995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12일간으로 한다.

## □ 제안이유

1.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편성의 합법성·적합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건전 재정운영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심 사 계 획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
  - 신속한 의사 진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
  
3. 활동기간
  - 1995년 12월 4일 ~ 1995년 12월 15일(12일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 7인이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기 간	내 용	비 고
'95.12. 4	. 위원장, 간사선임 . '94결산및예비비심사 (개요설명, 검토보고, 심사의결)	
12. 5 ~ 12 14	. '96년도예산안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심사및 의결, 심사보고서 채택)	
12.15	.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의결)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審 查 報 告 書

1995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回附決算

가.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 2.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출자 : 1995년 8월 30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1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 12. 4)

상정,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권혁승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총예산액이 575억8,662만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32억269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8억8,197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23억2,072만3천원임.
-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은 총123억2,072만3천원중 명시이월이 24억8,564만6천원, 사고이월이 65억6,313만6천원, 계속비 11억9,95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268만1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9억7,976만원임.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 신교선)

### 가. 일반회계세입

- 지방세는 목표액 60억300만원대 징수액은 63억 5,800만원으로 6%를 증액 징수 하였으나, 징수결정액중 미수납된 4억7,500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익년도로 이월 하였음.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2억7,500만원중 141%에 해당하는 127억2,700만원을 증액 징수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것이고, 실제 징수결정액 134억 9,300만원에 비하면 7억6,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중 일부 예산액보다 미교부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 위한 보존대책이 강구 되어야 함.
- 기타 94년도 세입결산은 대부분 수공이 되는 사항들임.

## 나. 일반회계세출

-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96억 4,400만원에 대하여 81%인 48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95년도 이월액 92억 100만원을 차감하면 3.5%에 해당하는 20억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볼수 있으나, 불용액 발생 원인이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어서 건전재정 운영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4억1,000만원으로 잉여율은 2.4%로 예년 평균추이임.
- 예산전용은 9개과목에서 9,500만원을 전용하였는바, 일부 전용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 기타 별다른 이상을 지적할 수 없었음.

##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 41억3,600만원중 지출액 25억2,0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10억4,6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억6,900만원임.
-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 확보없이 명목상 이월처리 한 사례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총예산액의 72%가 불용처리 된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처사임.

## 5.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광천수 연구개발등 전용 부적정</p>	<p>-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설비로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에 206 과목에서 404 시설비로 목간 전용을 한것으로 사업목적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사항임.</p>
<p>○ 군금고를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 할 용의는?</p>	<p>- 은행법에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에 강원은행과 농협뿐이며, 자산액이 군은 250억이상으로 지정 을 하고 있기에 대상 은행이 앞의 2개 은행으로 한정이 되어 있음. 재무회계 규칙상에도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 예치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현재 본군은 농협과 금고 계약이 되어 있음.</p>
<p>○ 주정차과태료 미징수 사유는?</p>	<p>- 주정차과태료는 체납시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기에 기일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전부 압류처리 하여서 매도, 폐차신청 당시에 수납 처리 를 하는 실정임.</p>
<p>○ 이월사업의 공기내 마무리 추진</p>	<p>-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 을 통하여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할 것임.</p>

## 6. 討 論 要 旨

【 없 음 】

## 7.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 8.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

## 9. 其 他 必 要 的 事 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 특별사항 : 없음.

1994 년 도

세 입 세 출 결 산 서

평 창 군

# 세 입 · 세 출 결 산 총 괄 설 명

## 1.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57,586,62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202,699,692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4,883,943,430 원(전년도 이월금 7,297,320,430 원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0,881,976,228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320,723,464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2,320,723,464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액 3,235,646,000 원 (2,485,646,000 + 750,000,000 명목상이월)
  - 사고이월액 6,563,136,500 원
  - 계속비이월액 1,199,500,00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92,681,00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제잉여금은 1,979,759,964 원이다.







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303,09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7,980,771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303,099,000        원(전년도 이월금                    원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6,633,60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41,347,171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241,347,171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액            1,650,000,000        원 (900,000,000원 + 750,000,000원 명목상이월포함)
  - 사고이월액            146,754,000        원
  - 계속비이월액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제잉여금은        194,593,171        원이다.









바.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77,84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642,512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7,843,000                원(전년도    이월금                                원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00,000                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14,242,512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4,242,512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액                                0                원
  - 사고이월액                                0                원
  - 계속비이월액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242,512    원이다.

○ 세입결산총괄

구	분	세입 액	비지출 액	세입비 율(%)	결수 결격액 (과)	수납액			비수납액 [(과)-(과)]	비수납액 비율		비율	
						수납액 (과)	비수납 액(과)	결 격 액 (과) [(과)-(과)]		결 손 액	비 율	[(과)/(과)]	[(과)/(과)]
합		57,586,623,000	7,297,320,430	64,883,943,430	64,840,012,113	63,588,449,691	385,749,999	63,207,699,692	1,637,313,421	2,300,660	1,635,012,761	5.9	5.9
계		52,347,328,000	7,297,320,430	59,644,648,430	60,309,531,381	59,451,626,293	385,487,539	59,066,143,754	1,243,387,627	2,300,660	1,241,086,967	6.4	6.3
일반	지방세	6,038,550,000	0	6,038,550,000	6,835,904,581	6,390,617,705	32,172,210	6,358,505,495	477,399,086	1,899,070	435,500,016		
	보통세	5,648,550,000	0	5,648,550,000	6,223,618,768	6,021,332,082	32,006,960	5,989,325,122	234,293,646	0	234,293,646		
	특별세	269,000,000	0	269,000,000	312,107,287	278,558,167	165,250	278,392,917	33,714,370	0	33,714,370		
	지방도수입	121,000,000	0	121,000,000	300,178,526	90,787,456	0	90,787,456	209,391,070	1,899,070	207,492,000		
	세외수입	5,215,668,000	7,297,320,430	12,512,988,430	13,493,379,800	12,076,999,588	349,608,329	12,727,391,259	765,988,541	401,590	765,586,951		
특별	광상적수입	2,850,540,000	0	2,850,540,000	3,034,794,580	3,154,831,750	144,328,430	3,010,503,320	24,291,260	0	24,291,260		
	합계특별	2,425,128,000	7,297,320,430	9,722,448,430	10,458,585,220	9,922,167,838	205,279,899	9,716,887,939	741,697,381	401,590	741,295,691		
	지방교부세	21,690,561,000	0	21,690,561,000	21,526,000,000	21,526,000,000	0	21,526,000,000	0	0	0		
	별정세	20,428,000,000	0	20,428,000,000	20,428,000,000	20,428,000,000	0	20,428,000,000	0	0	0		
	중액분	1,262,561,000	0	1,262,561,000	1,098,000,000	1,098,000,000	0	1,098,000,000	0	0	0		
	지방합계금	4,506,207,000	0	4,506,207,000	4,506,207,000	4,506,207,000	0	4,506,207,000	0	0	0		
	보조금	14,536,342,000	0	14,536,342,000	13,948,040,000	13,951,742,000	3,702,000	13,948,040,000	0	0	0		
	국교보조	6,390,717,000	0	6,390,717,000	6,302,319,000	6,305,771,000	3,452,000	6,302,319,000	0	0	0		
	도교보조	8,145,625,000	0	8,145,625,000	7,645,721,000	7,645,971,000	250,000	7,645,721,000	0	0	0		
	지방계	300,000,000	0	300,000,000	0	0	0	0	0	0	0		
계		5,239,295,000	0	5,239,295,000	4,530,481,732	4,136,823,398	267,460	4,136,555,938	393,925,794	0	393,925,794	0.005	0.006
특별	상수도	3,303,099,000	0	3,303,099,000	2,628,956,755	2,607,980,771	0	2,607,980,771	20,975,984	0	20,975,984		
	세외수입특별운영관리	279,177,000	0	279,177,000	373,264,151	339,023,151	0	339,023,151	34,241,000	0	34,241,000		
특별	주석특별	939,877,000	0	939,877,000	813,463,669	477,384,319	91,650	477,286,669	336,177,000	0	336,177,000		
	세외수입특별운영관리	77,843,000	0	77,843,000	81,174,322	78,812,322	169,810	78,642,512	2,531,810	0	2,531,810		
특별	국교보조	500,984,000	0	500,984,000	497,857,830	497,857,830	0	497,857,830	0	0	0		
	농림지구조성	138,315,000	0	138,315,000	136,565,005	136,565,005	0	136,565,005	0	0	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구분	과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 ㉠+㉡	지출원인행위액 ㉣	지출액 ㉤	익년도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계	57,586,623,000	7,297,320,430	64,883,943,430	57,445,112,728	50,881,976,228	10,998,282,500	3,003,684,702	
일반회계	소계	52,347,328,000	7,297,320,430	59,644,648,430	54,778,142,388	48,361,759,888	9,201,528,500	2,081,360,042	
	의회비	399,451,000	0	399,451,000	368,156,113	368,156,113	0	31,294,887	
	일반행정비	15,392,431,000	2,011,280,740	17,403,711,740	16,260,596,355	16,117,485,345	539,351,010	746,875,385	
	사회복지비	5,465,552,000	540,828,430	6,006,380,430	5,247,669,030	5,142,769,030	607,400,000	256,211,400	
	산업경제비	14,891,582,000	1,112,881,000	16,004,463,000	15,597,696,000	12,841,976,470	2,755,719,530	406,767,000	
	지역개발비	13,075,635,000	3,240,751,020	16,316,386,020	15,551,400,810	12,180,463,050	3,816,324,760	319,598,210	
	문화및체육비	1,586,818,000	785,288,240	2,372,106,240	846,224,440	804,510,240	1,482,733,200	84,862,800	
	민방위비	211,648,000	2,400,000	214,048,000	185,785,500	185,785,500	0	28,262,500	
지원및기타	1,324,211,000	-396,109,000	928,102,000	720,614,140	720,614,140	0	207,487,860		
특별회계	소계	5,239,295,000		5,239,295,000	2,666,970,340	2,520,216,340	1,796,754,000	922,324,660	
	상수부회계	3,303,099,000	0	3,303,099,000	1,513,387,600	1,366,633,600	1,796,754,000	139,711,400 (750,000,000)명목상이월	
	주부회계	939,877,000	0	939,877,000	477,286,660	477,286,660	0	462,590,340	
	의무공급부회계	500,984,000	0	500,984,000	488,138,130	488,138,130	0	12,845,870	
	생사관리부회계	279,177,000	0	279,177,000	78,570,000	78,570,000	0	200,607,000	
	농수산부회계	138,315,000	0	138,315,000	45,187,950	45,187,950	0	93,127,050	
	지산부회계	77,843,000	0	77,843,000	64,400,000	64,400,000	0	13,443,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0.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

(단위:원)

과목명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잉여액 (다)=[(가)-(나)]	잉여액내역					원년도 계부상환	거금전입 내역	비 고	
				별 어 액	사 고 액	계 속 액	보 조 금 사용잔액	세 제 입 액 금				
합 계	63,202,699,692	50,841,976,228	12,320,723,464	2,485,646,000	6,563,136,500	1,199,500,000	92,681,000	1,979,759,964		878,731,000		
합 합 계	59,066,143,754	48,361,759,848	10,704,383,866	1,585,646,000	6,416,382,500	1,199,500,000	92,681,000	1,410,174,366				
과목 별 내 역	계	4,136,555,938	2,520,216,340	1,616,339,598	900,000,000	146,754,000	0	0	569,585,598		878,731,000	
	상수도 특별회계	2,607,980,771	1,366,633,600	1,241,347,171	900,000,000	146,754,000			194,593,171		759,961,000	
	주식사업 특별회계	477,286,669	477,286,660	9					9		7,020,000	
	외도보조자금 운영특별회계	497,057,830	488,138,130	8,919,700					8,919,700		11,750,000	
	세비율소득 사업특별회계	339,023,151	78,570,000	260,453,151					260,453,151		100,000,000	
	농림수산관리 사업특별회계	136,565,005	45,187,950	91,377,055					91,377,055			
	저소득주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8,642,512	64,400,000	14,242,512					14,242,512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장	관	항		목	수 납 총액
합 계				52,347,328,000	60,309,531,381	59,451,626,293	385,482,539	59,066,143,754	1,243,387,627	2,300,660	1,241,086,967
지방세 수입				6,038,550,000	6,835,904,581	6,390,677,705	32,172,210	6,358,505,495	477,399,086	1,899,070	475,500,016
지방세				6,038,550,000	6,835,904,581	6,390,677,705	32,172,210	6,358,505,495	477,399,086	1,899,070	475,500,016
보통세				5,648,550,000	6,223,618,768	6,021,332,082	32,006,960	5,989,325,122	234,293,646	0	234,293,646
주민세				652,542,000	772,533,988	770,695,969	28,530,560	742,165,409	30,368,579	0	30,368,579
재산세				454,000,000	411,233,900	378,286,410	741,330	377,545,080	33,688,820	0	33,688,820
자동차세				897,004,000	988,229,650	928,065,160	651,380	927,413,780	60,815,870	0	60,815,870
농지세				2,000,000	13,012,990	13,012,990	0	13,012,990	0	0	0
도축세				48,000,000	38,259,300	38,259,300	0	38,259,300	0	0	0
담배소비세				2,143,004,000	2,517,211,590	2,517,211,590	0	2,517,211,590	0	0	0
종합토지세				1,452,000,000	1,483,137,350	1,375,800,663	2,083,690	1,373,716,973	109,420,377	0	109,420,377
목적세				269,000,000	312,107,287	278,558,167	165,250	278,392,917	33,714,370	0	33,714,370
도시계획세				135,000,000	170,477,520	155,053,030	165,250	154,887,780	15,589,740	0	15,589,740
사업소세				134,000,000	141,629,767	123,505,137	0	123,505,137	18,124,630	0	18,124,630
과년도 수입				121,000,000	300,178,526	90,787,456	0	90,787,456	209,391,070	1,899,070	207,492,000
과년도수입				121,000,000	300,178,526	90,787,456	0	90,787,456	209,391,070	1,899,070	207,492,000
세 외 수 입				5,275,668,000	13,493,379,800	13,076,999,588	349,608,329	12,727,391,259	765,988,541	401,590	765,586,951
경상적 세외수입				2,850,540,000	3,034,794,580	3,154,831,750	144,328,430	3,010,503,320	24,291,260	0	24,291,260
재산임대수입				172,945,000	145,770,035	127,359,555	2,326,480	125,033,075	20,736,960	0	20,736,960
국유재산임				33,593,000	18,056,175	15,197,585	341,540	14,856,045	3,200,130	0	3,200,130
공유재산임				139,352,000	127,713,860	112,161,970	1,984,940	110,177,030	17,536,830	0	17,536,830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	11,774,000	13,700,550	13,435,970	0	13,435,970	264,580	0	264,580
	도로사용료	10,000,000	11,352,880	11,088,300		11,088,300	264,580	0	264,580
	시장사용료	1,774,000	2,347,670	2,347,670		2,347,670	0	0	0
	수수료 수입	905,860,000	885,207,037	851,919,267	1,950	851,917,317	3,289,720	0	3,289,720
	판공업수입	764,020,000	667,249,737	667,249,737		667,249,737	0	0	0
	중지 수입	100,000,000	132,249,737	132,915,860		132,915,860	0	0	0
	폐기물수수	41,840,000	55,041,440	51,753,670	1,950	51,751,720	3,289,720	0	3,289,720
	사업장생산수입	159,886,000	140,295,375	140,295,375		140,295,375	0	0	0
	사업장생산	159,886,000	140,295,375	140,295,375		140,295,375	0	0	0
	징수교부금	1,488,075,000	1,610,903,100	1,752,903,100	142,000,000	1,610,903,100	0	0	0
	도세징수	1,218,787,000	1,490,617,000	1,490,617,000		1,490,617,000	0	0	0
	사용료징수	228,292,000	119,177,500	261,177,500	142,000,000	119,177,500	0	0	0
	기타징수	966,000	1,108,600	1,108,600		1,108,600	0	0	0
	이자수입	152,000,000	268,918,483	268,918,483		268,918,483	0	0	0
	이자수입	150,000,000	268,918,483	268,918,483		268,918,483	0	0	0
	기타이자	2,000,000	0	0		0	0	0	0
	일시적 세외수입	2,425,128,000	10,458,585,220	9,922,167,838	205,279,899	9,716,887,939	741,697,281	401,590	741,295,691
재산매각	1,552,000,000	2,147,967,459	1,716,126,474	204,259,369	1,511,867,105	636,100,354	0	636,100,354	
국유재산	12,000,000	42,530,140	41,394,840	0	41,394,840	1,135,300	0	1,135,300	
공유재산	1,540,000,000	2,105,437,319	1,674,731,634	204,259,369	1,470,472,265	634,965,054	0	634,965,054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항목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이월금	288,933,000	7,586,353,465	7,586,353,465	0	7,586,353,465	0	0	0
	순세계잉여	144,225,000	144,325,035	144,325,035	0	144,325,035	0	0	0
	국비사용잔	104,114,000	104,114,000	104,114,000	0	104,114,000	0	0	0
	도비사용잔	40,594,000	40,594,000	40,594,000	0	40,594,000	0	0	0
	전년도이월		7,297,320,430	7,297,320,430	0	7,297,320,430	0	0	0
	부담금	30,000,000	36,210,000	36,210,000	0	36,210,000	0	0	0
	일반부담금	30,000,000	36,210,000	36,210,000	0	36,210,000	0	0	0
	합수입	132,195,000	270,562,693	255,556,633	1,020,530	254,536,103	16,026,590	0	16,026,590
	불용품매각	120,000	0	0	0	0	0	0	0
	변상금		4,219,770	3,696,280	0	3,696,280	523,490	0	523,490
	위약금		120,950	120,950	0	120,950	0	0	0
	과태료	47,500,000	128,048,430	113,565,860	1,020,530	112,545,330	15,503,100	0	15,503,100
	기타합수입	84,575,000	138,173,543	138,173,543	0	138,173,543	0	0	0
	과년도수입	422,000,000	417,491,603	327,921,266	0	327,921,266	89,570,337	401,590	89,168,747
	과년도수입	422,000,000	417,491,603	327,921,266	0	327,921,266	89,570,337	401,590	89,168,747
	지방교부세	21,690,561,000	21,526,000,000	21,526,000,000	0	21,526,000,000	0	0	0
	지방교부세	21,690,561,000	21,526,000,000	21,526,000,000	0	21,526,000,000	0	0	0
	지방교부세	21,690,561,000	21,526,000,000	21,526,000,000	0	21,526,000,000	0	0	0
	법정교부세	20,428,000,000	20,428,000,000	20,428,000,000	0	20,428,000,000	0	0	0
	중액교부금	1,262,561,000	1,098,000,000	1,098,000,000	0	1,098,000,00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항목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지방양여금	4,506,207,000	4,506,207,000	4,506,207,000	0	4,506,207,000	0	0	0
	지방양여금	4,506,207,000	4,506,207,000	4,506,207,000	0	4,506,207,000	0	0	0
	지방양여금	4,506,207,000	4,506,207,000	4,506,207,000	0	4,506,207,000	0	0	0
	보조금	14,536,342,000	13,948,040,000	13,951,742,000	3,702,000	13,948,040,000	0	0	0
	국고보조금	6,390,717,000	6,302,319,000	6,305,771,000	3,452,000	6,302,319,000	0	0	0
	일반행정비보조	5,682,000	5,682,000	5,682,000	0	5,682,000	0	0	0
	일반행정비	5,682,000	5,682,000	5,682,000	0	5,682,000	0	0	0
	사회복지비보조	876,918,000	869,597,000	873,049,000	3,452,000	869,597,000	0	0	0
	사회복지비	876,918,000	869,597,000	873,049,000	3,452,000	869,597,000	0	0	0
	산업경제비보조	5,310,712,000	5,265,635,000	5,265,635,000	0	5,265,635,000	0	0	0
	산업경제비	5,310,712,000	5,265,635,000	5,265,635,000	0	5,265,635,000	0	0	0
	지역개발비보조	39,831,000	3,831,000	3,831,000	0	3,831,000	0	0	0
	지역개발비	39,831,000	3,831,000	3,831,000	0	3,831,000	0	0	0
	문화및체육보조	18,230,000	18,230,000	18,230,000	0	18,230,000	0	0	0
	문화및체육	18,230,000	18,230,000	18,230,000	0	18,230,000	0	0	0
	민방위비보조	1,306,000	1,306,000	1,306,000	0	1,306,000	0	0	0
	민방위비	1,306,000	1,306,000	1,306,000	0	1,306,000	0	0	0
	병사비보조	138,038,000	138,038,000	138,038,000	0	138,038,00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장	관	항	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계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병사비	138,038,000	138,038,000	138,038,000	0	138,038,000	0	0	0
				도비보조금	8,145,625,000	7,645,721,000	7,645,971,000	250,000	7,645,721,000	0	0	0
				일반행정비보조	537,938,000	537,741,000	537,741,000	0	537,741,000	0	0	0
				일반행정비	537,938,000	537,741,000	537,741,000	0	537,741,000	0	0	0
				사회복지비보조	494,145,000	491,266,000	491,516,000	250,000	491,266,000	0	0	0
				사회복지비	494,145,000	491,266,000	491,516,000	250,000	491,266,000	0	0	0
				산업경제비보조	4,520,509,000	4,033,373,000	4,033,373,000	0	4,033,373,000	0	0	0
				산업경제비	4,520,509,000	4,033,373,000	4,033,373,000	0	4,033,373,000	0	0	0
				지역개발비보조	1,383,000,000	1,383,000,000	1,383,000,000	0	1,383,000,000	0	0	0
				지역개발비	1,383,000,000	1,383,000,000	1,383,000,000	0	1,383,000,000	0	0	0
				문화및체육보조	923,810,000	923,930,000	923,930,000	0	923,930,000	0	0	0
				문화및체육	923,810,000	923,930,000	923,930,000	0	923,930,000	0	0	0
				민방위비보조	286,223,000	276,411,000	276,411,000	0	276,411,000	0	0	0
				민방위비	286,223,000	276,411,000	276,411,000	0	276,411,000	0	0	0
				국내차입금	300,000,000	0	0	0	0	0	0	0
				국내차입금	300,000,000	0	0	0	0	0	0	0
				차입금	300,000,000	0	0	0	0	0	0	0

#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5.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1994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임.

## 2. 주요골자

가. '94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歲入決算額 (나)	가/나 (%)	歲出決算額 (다)	가/다 (%)	歲計剩餘金 (라)	나/라 (%)
計	57,586,623	63,202,699	109	50,881,976	88	12,320,723	19
一般會計	52,347,328	59,066,143	112	48,361,760	92	10,704,383	18
特別會計	5,239,295	4,136,556	79	2,520,216	67	1,616,340	39

1) 세입결산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徵收決定額 (나)	가 나 (%)	收納額 (다)	나 다 (%)	未水納額 (라)	다 라 (%)
計	57,586,623	64,840,013	112	63,202,699	97	1,637,314	2
一般會計	52,347,328	60,309,531	115	59,066,143	98	1,243,388	2
特別會計	5,239,295	4,530,482	86	4,136,556	91	393,926	9



2) 세출결산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支出額 (나)	마 나 (%)	移越額 (다)	마 다 (%)	不用額 (라)	마 라 (%)	豫算現額 (마)
計	57,586,623	50,881,976	78	10,998,282	17	3,003,685	4	64,883,943
一般會計	52,347,328	48,361,760	81	9,201,528	15	2,081,360	3	59,644,648
特別會計	5,239,295	2,520,216	48	1,796,754	3	922,324	2	5,239,295

3) 세계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千원)

會計別	計 (가)	明 示 移 越	事 故 移 越	繼 續 費 (라)	補 助 金 殘 額	純 歲 計 剩 餘 金
計	12,320,723	2,485,646	6,563,136	1,199,500	92,681	1,979,760
一般會計	10,704,383	1,585,646	6,416,382	1,199,500	92,681	1,410,174
特別會計	1,616,340	900,000	146,754			569,586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나. 지방제정법 시행령제38조

4. 기타사항

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자료 별지참조.

나. '94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별첨.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의 결산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4 세입·세출 결산검사

指摘事項處理結果報告書

平 昌 郡

인번	제 목	지 격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1	'94세입·세출 깊산 부실	결산관련 장부 계산 검정결과 기재사항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 확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코져함.</li> <li>○ 관련실과는 담당직원 교육및 업무연관 확행으로, 정확한 통계수치기록 유지토록 조치 (실과장회의시 전달교육)</li> </ul>	재무과 내무과
2	전용예산의 불용 및 사고이월부당	광천수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206)23 백만원을 당초예산 에 편성하여 사업추 진과정에서 시설비 (404)로 전용하여 계약차액 2,200천원 은 불용처리하고 계 약금액20,800천원에 대하여 사고이월처 리 함은 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광천수개발비로 23백만원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206)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설비(404)목으로 전용하고 계약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2,200천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비(계약금액)는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처리하였음.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음.</li> </ul>	기획실 (예산계)
3	예산액 전용 부적 정	쓰레기처리대책으로 뜯은박스구입비 20 백만원을 예산에 계 상하였으나 '94.9.3 일 쓰레기 처리용기 비로 18,500천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당초예산에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뜯은박스 구입비를 20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파트등 다중집합장소등에 분리수거용기 부족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li> </ul>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퇴색된 물은박스 도 색비로 1,500천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 계상액 전액을 전용 함은 부적정함 .	있어 쓰레기분리수거 조기정착 을 위하여 분리수거용기구입비 로 18,500천원과 기존물은박스 도색비로 1,500천원으로 지방 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였음. 향후 시책 의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음.	
4	세입금 결손처분 미흡	미납사유중 거소불 명 재력부족이 있음 에도 결손처분 미처 리	◦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조회 및 재산조회실시후 결손처분 계획임.	각 읍·면 재 무 과 (징 수 계)
5	과태료 징수제도 미비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 미비	◦ 미수분이 대부분 관외자의 주정차과태료이며,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체납처분을 하고있음	각 읍·면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6	세입금 과목적용 부당	지도소 예찰포 부산 물 매각대금을 잡수 입으로 처리	◦ 세입일계표 작성자에게 세입 편성도를 숙지하도록 함.	재 무 과 (재 무 과)
7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세입 관리	◦ 세입 징수결정 : ₩2,628,956,755 징 수 액 : ₩2,607,980,771 미수액 : ₩20,975,9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회계독립 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년도 폐쇄기기 까지 회계년도분이 수입 되어야함에도 사업수입 (영업용) 10,276,345원 사업 외수입금 7,541,175 원의 미수금이 이월 되었음.	◦ '94년 미수액중 사업수입 13,434,809원에 대하여 '95년 으로 미수액은 5,643,230원임.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급수 중단및 최고, 독촉발부등 납부 독려 사업외수입 7,541,175원은 전액 징수.	도 시 과 (주 택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8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 징 수 결 정 : ₩813,464,669</li> <li>징 수 액 : ₩477,286,669</li> <li>미 수 액 : ₩336,177,000</li> </ul> <p>미납금에 대한 사후 관리미흡과 입주자 변동사항 미파악 상환대상 일괄성이 없었으며 읍,면 업무 분담 불분명으로 상환금 미수가 누년간 체납되었음.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제16조(보험가입)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납자에 대한 특별납입특려 및 입주자 변동사항을 읍면에 지시로 변동사항 파악 및 관리</li> <li>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 특려</li> </ul>	도 시 과 (주 택 계)
9	예산 집행 관리 미흡	<p>일반회계세출예산중 모범공무원효도관광을 위한 사업 7,500천원의 26건 81,608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중 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금 19,420천원이 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함은 불합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강원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던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련부서 직원들의 범규연찬부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없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li> <li>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업무연찬기회를 부여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li> </ul>	기 획 실 (예 산 계)
10	예산관리 비효율적 운영	<p>'93년도 세출예산중 크로스컨트리조성사업부대비, 공설묘지 기본설계용역비 및 군도정비사업부대비를 사고이월하였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 40조에 각종 사업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 사업비가 이월되면 당해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도 이월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93년세출 예산중 크로스컨트리</li> </ul>	기 획 실 (예 산 계)

연번	계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p>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불합리함</p> <p>-크로스컨트리 부대비 불용액 15,490,180원</p> <p>-공설묘지기본설계 용역비 불용액 50백만원</p> <p>-군도정비부대비 불용액 65,430,470원</p>	<p>조성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군도정비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시설비와 부대경비를 이월조치하고 '94년도 사업준공결과 부대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한 사항임. 향후 부대비용도 정확한 집행금액을 추계하여 필요한 경비만 이월되도록 노력하겠음</p>	<p>기 획 실 (예산계)</p>
11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p>· 봉평·진부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사업성격상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94.9.27예비비에서 지출승인하여 추진한 것과</p> <p>· 고심명보 의원 추모영결식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함은 불합리함.</p>	<p>○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용(주)보광으로부터 25억원을 부담키로 '94.9.13 합의각서를 징구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진부상수도 시설확장공비는 환경처에 요청하였던바 기본계획수립이후 지원하겠다고 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94.9.27 예비비에서 지출승인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4.10.12 국비 '94년 15억원과 '95년도 10억원을 보조하겠다는 내시문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군정유공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심명보 국회의원 평창군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추모영결식 경비 1,94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던 것임.</p> <p>앞으로는 유공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 예비비집행을 억제토록 하겠음.</p>	
12	예비비 예산운용 부적정	<p>토지관리업무보조원 양회수의 5인에 대한 퇴직금 22,511천원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에서 집행함은 불합리함.</p>	<p>○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토지관리업무보조원 양회수의 5인이 퇴직금청구가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고 있음.</p>	<p>기 획 실 내 무 과</p>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13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 부적정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평창경찰서방림파출소 담당경비보수비로 24백만원을 지원함은 불합리함.	방림파출소는 횡성~평창을 연결하는 42번 국도변에 있는 첫번째 공공시설로서 '94년 국도포장공사가 완료되자 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담장이 없는 방림파출소에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24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임.	사회진흥과 방 립 면
14	위법지출원인행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개읍면 세입·세출을 현금계좌로 송금 미탄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회계 관련법규 연찬 철저</li> <li>○ 군 금고 잠수입으로 납부처리 완료</li> </ul>	농촌지도소 미 탄 면
15	읍면 결산 설명 자료의 부실	'94년부1인당 2,000 지급하여야 하나 1,000씩 지급됨.  출생신고때마다 지급하여야하나 일괄 지급으로 행정목적 비효율성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예산범위내에 2,000원씩 적정지급</li> <li>○ 출생신고시 즉시지급 행정목적 달성</li> <li>○ 기관장 확인감독철저</li> </ul>	정 광 읍
16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출집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 예산액 : ₩ 939,877,000</li> <li>지출액 : ₩ 477,286,660</li> <li>불용액 : ₩ 462,590,340</li> </ul> 불용액중 인건비와 필수경비의 주택상환금회수분만지속하고 미수액누적으로 인한 사용잔액의 미수금을 과다하게 이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기적인 주택사업관리로 채무의 누적과 입주자의 연체 이자 부담해소</li> <li>- 상환납입금 즉시납입등</li> </ul>	도 시 과 (주 택 계)
17	예산 부당 명시 이월	진부상수도확장공사비 15억원중 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현액이 없는상태로 명시이월	진부상수도확장공사비 15억원 중액교부금 7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등 공기부족이 예상되어 '94. 12. 21 평창군의 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결산시점인 '95. 3. 10까지 송금되지 않아 부득이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현액없이 명목상이월초치하였음.	도 시 과 (수 도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18	명시 이월 절차 결어	'94년도 세출예산중 총35건에 3,235,646천원을 명시 이월함에 있어 '94년 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읍면사업 17개사업 3억원에 대하여 읍면으로부터 명시이월 요구절차없이 명시이월조치 하였음.	○ '94년도 세출 예산중 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할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이월할경우 해당부서로부터 이월요구서를 징구받아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승인을 득한후 이월하도록 되어있으나 '94 제3회추경 예산제출 '94. 12. 10. 및 '95당초예산은 '94. 11. 21 의회에 각각 제출시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94 제3회 추경에서 확정된 읍면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요구서징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조치 하였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기 획 실 (예 산 계)
19	예산의 불합리 편성	대화체육관건립관련 예산과 소규모소각로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들 시설비와 동시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함은 불합리함.	○ 대화체육관건립사업비는 '94년 1회추경시 도비 2억원이 내시되어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요율을 산정하였던바 건설부 고시요율과 금액 차이가 있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94 제3회 추경에서 건설부고시요율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고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조치 하였음. · 소규모소각로 설치사업비 또한 '94년1회추경예산편성시 도비1억이 내시되면서 군비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선정이 어려워 명시이월조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	사회진흥과 (체 육 청소년계) 환경보호과 (폐 기 물 관 리 계)
20	예산 부담 사고 이월	'94세출예산중 후평~원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403)의 원인행위없이 이월함. 봉평도읍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403) 39,810천원을 공기부족을 명목으로 사고이월 조치함은 부담함.	○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각종사업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사업비가 이월되면 당해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403목은 사업추진상 발생하는 측량수수료및 경비로 집행할수있는 경비로서 당해사업에대한 시설비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됨에 따라 사업 부대 경비로서 이월한바 원인행위없이 이월하지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기가 부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설 과 (토 목 계) 사회진흥과 (개 발 계)

연번	계 목	지 적 사 항	치 리 상 황	관련부서
21	결산 설명자료의 부실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130조의 지출계산 서 작성 및 제131조 의 출납계산서 작성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 작성 실시</li> <li>○ 동규칙130조의 지출계산서 및 제131조의 출납계산서 작성 실시</li> </ul>	각 읍·면 (총 무 계)
22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1. 생활보호적립기금 - 대장 미비치 - 기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 미임명 2.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 대장 미비치 - 기금 출납명령관 및출납공무원미임명	1. 생활보호적립기금 -대장 작성 비치 - 기금 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 임명 ○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과장 ○ 출납공무원 : 사회계장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대장 작성 비치 - 기금 출납명령관 및 출납 공무원 임명 ○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과장 ○ 출납공무원 : 사회계장	사 회 과 (사 회 계)
23	채권 채무관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은행의 채무액 94년말 : ₩ 2,995,299,110 중 기간도래액 : ₩ 336,176,950</li> <li>○ 수요자의 실채무 로서 군수명의로 되 어있어 채권이기도 함.</li> <li>○ 기간 도래된 미납 액의 과다발생</li> <li>○ 적채기간이 장기 화 될수록 군수채무 액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와 주택은행간의 직결 거래로 본군의 채권없는 채무 액 최소화방안 강구.</li> <li>○ 기간도래된 미납 연체액의 납부촉려(징수반 편성 운영)</li> <li>○ 강제징수 절차 이행</li> <li>독촉장발부 → 납부최고압류 → 법원경매</li> </ul>	도 시 과 (주 택 계)





# 1994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5.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1994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3. 1994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총괄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歲入決算額 (나)	가/나 (%)	歲出決算額 (다)	가/다 (%)	歲計剩餘金 (라)	나/라 (%)
計	57,586,623	63,202,699	109	50,881,976	88	12,320,723	19
一般會計	52,347,328	59,066,143	112	48,361,760	92	10,704,383	18
特別會計	5,239,295	4,136,556	79	2,520,216	67	1,616,340	39

○ 세입결산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徵收決定額 (나)	가 나 (%)	收納額 (다)	나 다 (%)	未水納額 (라)	다 라 (%)
計	57,586,623	64,840,013	112	63,202,699	97	1,637,314	2
一般會計	52,347,328	60,309,531	115	59,066,143	98	1,243,388	2
特別會計	5,239,295	4,530,482	86	4,136,556	91	393,926	9

○ 세출결산

(단위 : 千원)

會計別	豫算額 (가)	支出額 (나)	가 나 (%)	移越額 (다)	가 다 (%)	不用額 (라)	가 라 (%)	豫算現額 (마)
計	57,586,623	50,881,976	78	10,998,282	17	3,003,685	4	64,883,943
一般會計	52,347,328	48,361,760	81	9,201,528	15	2,081,360	3	59,644,648
特別會計	5,239,295	2,520,216	48	1,796,754	3	922,324	2	5,239,295

○ 세계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千원)

會計別	計 (가)	明 示 移 越	事 故 移 越	繼 續 費 (라)	補 助 金 殘 額	純 歲 計 剩 餘 金
計	12,320,723	2,485,646	6,563,136	1,199,500	92,681	1,979,760
一般會計	10,704,383	1,585,646	6,416,382	1,199,500	92,681	1,410,174
特別會計	1,616,340	900,000	146,754			569,586

4. 기타사항

○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자료 참조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의 결산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4 세입·세출 결산검사

指摘事項處理結果報告書

平 昌 郡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1	'94세입·세출 결산 부실	결산관련 장부 계산 검정결과 기재사항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 확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코져함.</li> <li>○ 관련실과는 담당직원 교육및 업무연찬 확행으로, 정확한 통계수치기록 유지토록 조치 (실과장회의시 전달교육)</li> </ul>	재무과 내무과
2	전용예산의 불용 및 사고이월부당	광천수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206)23 백만원을 당초예산 에 편성하여 사업추 진과정에서 시설비 (404)로 전용하여 계약차액 2,200천원 은 불용처리하고 계 약금액20,800천원에 대하여 사고이월처 리 함은 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광천수개발비로 23백만원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206)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설비(404)목으로 전용하고 계약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2,200천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비(계약금액)는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처리하였음.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음.</li> </ul>	기획실 (예산계)
3	예산액 전용 부적 정	쓰레기처리대책으로 물은박스구입비 20 백만원을 예산에 계 상하였으나 '94.9.3 일 쓰레기 처리용기 비로 18,500천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당초예산에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물은박스 구입비를 20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파트등 다중집합장소등에 분리수거용기 부족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li> </ul>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퇴색된 틀은박스 도 색비로 1,500천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 계상액 전액을 전용 함은 부적정함 .	있어 쓰레기분리수거 조기정착 을 위하여 분리수거용기구입비 로 18,500천원과 기존틀은박스 도색비로 1,500천원으로 지방 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였음. 향후 시책 의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음.	
4	세입금 결손처분 미흡	미납사유중 거소불 명 재력부족이 있음 에도 결손처분 미처 리	◦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조회 및 재산조회실시후 결손처분 계획임.	각 읍·면 재 무 과 (징 수 계)
5	과태료 징수제도 미비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 미비	◦ 미수분이 대부분 관외자의 주정차과태료이며,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체납처분을 하고있음	각 읍·면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6	세입금 과목적용 부당	지도소 예찰포 부산 물 매각대금을 잡수 입으로 처리	◦ 세입일계표 작성자에게 세입 편성도를 숙지하도록 함.	재 무 과 (재 무 과)
7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세입 관리	◦ 세입 징수결정 : ₩2,628,956,755 징 수 액 : ₩2,607,980,771 미수액 : ₩20,975,9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회계독립 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년도 폐쇄기기 까지 회계년도분이 수입 되어야함에도 사업수입 (영업용) 10,276,345원 사업 외수입금 7,541,175 원의 미수금이 이월 되었음.	◦ '94년 미수액중 사업수입 13,434,809원에 대하여 '95년 으로 미수액은 5,643,230원임.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급수 중단및 최고, 독촉발부등 납부 독려 사업외수입 7,541,175원은 전액 징수.	도 시 과 (주 택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8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 징수결정 : ₩813,464,669</li> <li>징수액 : ₩477,286,669</li> <li>미수액 : ₩336,177,000</li> </ul> <p>미납금에 대한 사후 관리미흡과 입주자 변동사항 미파악 상환대상 일괄성이 없었으며 읍,면 업무 분담 불분명으로 상환금 미수가 누년간 체납되었음.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제16조(보험가입)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납자에 대한 특별납입독려 및 입주자 변동사항을 읍면에 지시로 변동사항 파악 및 관리</li> <li>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 독려</li> </ul>	도시과 (주택계)
9	예산 집행 관리 미흡	<p>일반회계세출예산중 모범공무원효도관광을 위한 사업 7,500천원의 26건 81,608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중 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금 19,420천원이 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함은 불합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공설요지조성사업은 강원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던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련부서 직원들의 범규연찬부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없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li> <li>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업무연찬기회를 부여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li> </ul>	기획실 (예산계)
10	예산관리 비효율적 운영	'93년도 세출예산중 크로스컨트리조성사업부대비, 공설요지 기본설계용역비 및 군도정비사업부대비를 사고이월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 40조에 각종 사업이 이월함에 있어 당해 사업비가 이월되면 당해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도 이월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93년세출 예산중 크로스컨트리</li> </ul>	기획실 (예산계)

연번	계 목	지 적 사 항	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p>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불합리함</p> <p>-크로스컨트리 부대비 불용액 15,490,180원</p> <p>-공설묘지기본설계 용역비 불용액 50백만원</p> <p>-군도정비부대비 불용액 65,430,470원</p>	<p>조성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군도정비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시설비와 부대경비를 이월조치하고 '94년도 사업준공결과 부대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한 사항임. 향후 부대비용도 정확한 집행금액을 추계하여 필요한 경비만 이월되도록 노력하겠음</p>	<p>기 획 실 (예산계)</p>
11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p>· 봉평·진부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사업성격상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94.9.27예비비에서 지출승인하여 추진한 것과</p> <p>· 고심명보 의원 추모영결식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함은 불합리함.</p>	<p>○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를 (주)보광으로부터 25억원을 부담키로 '94.9.13 합의각서를 정구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진부상수도 시설확장공비는 환경처에 요청하였던바 기본계획수립이후 지원하겠다고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94.9.27 예비비에서 지출승인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4.10.12 국비 '94년 15억원과 '95년도 10억원을 보조 하겠다는 내시문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군정유공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심명보 국회의원이 평창군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추모영결식 경비 1,94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던 것임.</p> <p>앞으로는 유공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 예비비집행을 억제토록 하겠음.</p>	<p>〃</p>
12	예비비 예산운용 부적정	<p>토지관리업무보조원 양회수외 5인에 대한 퇴직금 22,511천원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에서 집행함은 불합리함.</p>	<p>○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토지관리업무보조원 양회수외 5인이 퇴직금청구가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고 있음.</p>	<p>기 획 실 내 무 과</p>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13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 부적정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평창경찰서방립파출 소 담당정비보수비 로 24백만원을 지원 함은 불합리함.	방립파출소는 횡성~평창을 연 결하는 42번 국도변에 있는 첫번째 공공시설로서 '94년 국 도포장공사가 완료되자 이도로 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 이 예상되어 담장이 없는 방립 파출소에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24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임.	사회진흥과 방 립 면
14	위법지출원인행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을 8개읍면 세입· 세출을 현금계좌로 송금 미탄면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회계 관련법규 연찬 철저</li> <li>○ 군금고 잠수입으로 납부처리 완료</li> </ul>	농촌지도소 미 탄 면
15	읍면 결산 설명 자료의 부실	'94년부1인당2,000 지급하여야 하나 1,000씩 지급됨.  출생신고때마다 지 급하여야하나 일괄 지급으로 행정목적 비효율성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예산범위내에 2,000원 씩 적정지급</li> <li>○ 출생신고시 즉시지급 행정목 적 달성</li> <li>○ 기관장 확인감독철저</li> </ul>	평창읍
16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출집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 예산액 : ₩ 939,877,000</li> <li>지출액 : ₩ 477,286,660</li> <li>불용액 : ₩ 462,590,340</li> </ul> <p>불용액중 인건비와 필수경비의 주택상 환금회수분만지축하 고 미수액누적으로 인한 사용잔액외 미 수금을 과다하게 이 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기적인 주택사업관리로 채 채무의 누적과 입주자의 연체 이자 부담해소</li> <li>- 상환납입금 즉시납입등</li> </ul>	도 시 과 (주 택 계)
17	예산 부당 명시 이월	진부상수도확장공사 비 15억원중 도비보 조금 7억5천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현액 이 없는상태로 명시 이월	진부상수도확장공사비 15억원 은 증액교부금 7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등 공기부족이 예상되어 '94. 1 2. 21 평창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으나 도비보 조금이 결산시점인 '95. 3. 10까 지 송금되지 않아 부득이 7억5 천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현액없 이 명목상이월조치하였음.	도 시 과 (수 도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 련 부 서
18	명시 이월 절차 결여	'94년도 세출예산중 총35건에 3,235,646천원을 명시 이월함에 있어 '94년 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읍면사업 17개사업 3억원에 대하여 읍면으로부터 명시이월 요구절차없이 명시이월조치 하였음.	○ '94년도 세출 예산중 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할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이월할경우 해당부서로부터 이월요구서를 징구받아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승인을 득한후 이월하도록 되어있으나 '94 제3회추경 예산제출 '94. 12. 10. 및 '95당초예산은 '94. 11. 21 의회에 각각 제출시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94 제3회 추경에서 확정된 읍면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요구서징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조치 하였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기 획 실 (예 산 계)
19	예산의 불합리 편성	대화체육관건립관련 예산과 소규모소각로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와 동시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함은 불합리함.	○ 대화체육관건립사업비는 '94년 1회추경시 도비 2억원이 내시되어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요율을 산정하였던바 건설부고시요율과 금액 차이가 있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94 제3회 추경에서 건설부고시요율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고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조치하였음. · 소규모소각로 설치사업비 또한 '94년1회추경예산편성시 도비1억이 내시되면서 군비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선정이 어려워 명시이월조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	사 회 진 흥 과 (체 육 청 소 년 계) 환 경 보 호 과 (폐 기 물 관 리 계)
20	예산 부당 사고 이월	'94세출예산중 후평~원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403)의 원인행위 없이 이월함. 봉평도읍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403) 39,810천원을 공기부족을 명목으로 사고이월 조치함은 부당함.	○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각종사업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사업비가 이월되면 당해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403목은 사업추진상 발생하는 측량수수료및 경비로 집행할수있는 경비로서 당해사업에대한 시설비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됨에 따라 사업 부대 경비로서 이월한바 원인행위없이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고 공기가 부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설 과 (토 목 계) 사 회 진 흥 과 (개 발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관련부서
21	결산 설명자료의 부실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130조의 지출계산 서 작성및 제131조 의 출납계산서 작성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1조 규정에의한 결산서작성 실시</li> <li>◦ 동규칙130조의 지출계산서및 제131조의 출납계산서 작성 실시</li> </ul>	각 읍·면 (총 무 계)
22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보호적립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 미비치</li> <li>- 기금출납명령관및 출납공무원 미임명</li> </ul> </li> <li>2.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 미비치</li> <li>- 기금 출납명령관 및출납공무원미임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보호적립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 작성 비치</li> <li>- 기금 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 임명</li> </ul> </li> <li>◦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과장</li> <li>◦ 출납공무원 : 사회계장</li> <li>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 작성 비치</li> <li>- 기금 출납명령관및 출납 공무원 임명</li> </ul> </li> <li>◦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과장</li> <li>◦ 출납공무원 : 사회계장</li> </ul>	사 회 과 (사 회 계)
23	채권 채무관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은행의채무액 94년말 : ₩ 2, 995, 299, 110중 기간도래액 : ₩ 336, 176, 950</li> <li>◦ 수요자의 실채무 로서 군수명의로 되 어있어 채권이기도 함.</li> <li>◦ 기간 도래된 미납 액의 과다발생</li> <li>◦ 적체기간이 장기 화 될수록 군수채무 액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와 주택은행간의 직결 거래로 본군의 채권없는 채무 액 최소화방안 강구.</li> <li>◦ 기간도래된 미납 연체액의 납부독려(징수반 편성 운영)</li> <li>◦ 강제징수 절차 이행</li> <li>독촉장발부 → 납부최고압류 → 법원경매</li> </ul>	도 시 과 (주 택 계)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상 황	처리부서
24	채권업무 처리 지연	공유재산 채납 임대 료 '94년말 현재액 84,321,440원	○가압류 22,117,590원 실시  ○향후처리 계획 - 년말까지 집중납부특려 및 채납자 압류물건 확보 후 압 류조치 계속추진 계획.	재 무 과  (관재계)
25	공유재산, 권리 보존조치 미이행	'94년도 일반회계 토지 매입비 취득토 지중 결산 누락 14필	○각 사업부서(건설, 가정복지, 산림)와 유기적인 협조로 재산 관리 누수방지(빠른시일내 등기필후 일괄관리)	재 무 과  (관재계)
26	공유재산 물품 관리 부적정	· 정기적 가격 재평 가 미이행  · '94년말 현재액 신 뢰성 결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마다 12월31일 현재로 소관 공 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 하도 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1년마다 정 기적 가격평가는 어려운실정임  ○예산회계법 10조에 의하면 특 별회계만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2조, 104조 및 시행령 제130조에 의하여 일반 물품은 가격개정과 감가상각을 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재 무 과  (관재계)  (경리계)
27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실	· 세입세출의 현금 의 종류별 수불관 리 명확성결여  · 회계년도 소속혼 란과 결산불이행	○평창군 재부회계규칙 제146 조제12항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부와 내역부 여 성실관리  ○동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의 한 출납계산서 이행실시	읍면공통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豫備費支出承認의件

# 審 查 報 告 書

1995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回附豫備費

가.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2.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22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1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2. 4)

상정, 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

가. 제안이유

-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8,104만8천원으로서 토지과표업무 보조원 퇴직금의 16건에 3억9,610만9천원을 지출하였음.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고선)

-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들로써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들이었으며, 특히

· 세출의 예측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업무보조원등에 대한 퇴직금의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것으로 사료되며,

· 봉평·진부상수도 설계용역비 2억원은 예비비 지출 항목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당시 사업추진 정황을 이유로 지출을 한것은 부적정한 사항이었음.

## 5.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봉평·진부상수도 설계용역비 지출 부적정</p>	<p>·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광의 부담계획이 있었고, 기체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선 사전 총 사업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로 지출한 것임.</p>
<p>○ 군정유공자에 대한 예비비 지출 부적정</p> <p>- 보상금 또는 기관장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함.</p>	<p>· 군정수행을 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은 당시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을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p>

## 6. 討論要旨

【 없음 】

## 7. 審査結果

【 원안가결 】

##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

## 9. 其他 必要한事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특기사항 : 없음

#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의안 번호	11
----------	----

제안년월일 : 1995. 9.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1994년도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임.

## 2. 주요골자

- 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581,048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 일반행정비 부문에 예산업무보조원 퇴직금의 7건에 82,312천원
  - 사회복지비 부문에 환경 미화원 퇴직금의 2건에 15,723천원,
  - 산업경제비 부문에 이상 저온현상 피해작물 대파대의 2건에 66,782천원,
  - 지역개발비 부문에 급수시설 피해복구 사업비의 2건에 231,292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17건에 396,109천원을 집행하였음.

##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 관계법령 발췌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 120조

제 120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사서

(단위: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현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리일자			사유
							지결 일자	지출 일자	승인 일자	
세항	세세항	①	②	③	①-②	①-③				
		396,109,000	396,109,000	396,109,000						
세경관리	지방세관리	1,189,000	1,189,000	1,189,000			3. 2		3. 2	토지과표입부보조 원 피지급
사무관리	사무관리	1,624,000	1,624,000	1,624,000			4.19		4.19	행정전산입부보조 원 피지급
정소작업 관 리	공중변소 관 리	8,662,000	8,662,000	8,662,000			6.13		6.13	환경머화원피지급
사무관리	사무관리	1,963,000	1,963,000	1,963,000			6.17		6.17	고삼정보의현영결 추모식경비지원
농산관리	식량공산	36,982,000	36,982,000	36,982,000			6.27		6.27	5.19어상저은현상 피해과물대과대지 원
농산관리	식량공산	7,800,000	7,800,000	7,800,000			6.28		6.27	백물바구미대과대 지원
사무관리	사무관리	62,593,000	62,593,000	62,593,000			6.27		6.27	고 최진관부군수 유족보상
위생관리	위생관리	1,500,000	1,500,000	1,500,000			8. 2		8. 2	94.6.30-7.1간이 급수시설피해복구 사업지원
학원관리	운동학원 관 리	29,599,000	29,599,000	29,599,000			8. 6		8. 6	94.6.30-7.1수해 복구사업비 지원
인사관리	인사관리	2,000,000	2,000,000	2,000,000			8.11		8.11	공무상요양비 (오경환)
농시시원 구	경영관리	22,000,000	22,000,000	22,000,000			8. 6		8. 6	농산물가격정보및 농사정보용담기설 치(남의복구)
건설행정	보상관리	1,693,000	1,693,000	1,693,000			9. 6		9. 6	일용인부피지급 (장희규)
예산운영	시군구예산 운	6,147,000	6,147,000	6,147,000			9.27		9.27	일용인부피지급 (김선희)
도시계획 관 리	도시계획 관 리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9.27		9.27	봉평,전부상수도 설계용역비
세경관리	지방세관리	2,196,000	2,196,000	2,196,000			12. 1		12. 1	일용인부피지급 (이길화)
인사관리	인사관리	4,600,000	4,600,000	4,600,000			12.15		12.15	공무상 요양비 (전재구)
정소행정 관 리	정소행정 관 리	5,561,000	5,561,000	5,561,000			12.29		12.29	개발용물수질강려 급 지급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관철을위한  
성명서 채택의견

의안 번호	33
----------	----

발의년월일 : 1995년 12월

제안자 : 우강호의원의외3인

## 1. 주 문

우리는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일부계층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평창군은 84%가 산지로서 산지가 곧 삶의 터전이며 산지 개발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부 세력은 곧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려는 자들이다. 그들의 작태에 은뎀으로 대항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 단체에서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삶의 터전 전체를 보호라는 미명아래 모든 개발을 억제하여 낙후는 물론 생존권에도 막대한 침해를 입혀 왔으나 숨죽여 살아 왔다.

그러나 그간의 낙후되고 허덕이는 경제를 살리고 아름다운 고향의 산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자존과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여, 그간의 한을 달래고자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우매하고 형평성 잃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 소수 국회의원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다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마저 무산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원도에서 '95년 5월 환경전문가들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환경부의 의견을 대폭수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80%나 축소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슬로프개발 예정지내에 있는 주목 7그루만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주목이 발왕산에만 있고 슬로프가 조성되면 이지역의 주목이 모두 훼손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일부 언론도 정확한 검증없이 일방의 주장에만 편을 들어 우리의 생존권 말살에 동조하고 있다.

전북의 덕유산은 국립공원 지역인데도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천연보호림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해 주고 우리군의 경우는 당치도 않은 트집을 잡아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모든 대회의 유치를 전북 무주로 하려는 음흉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생존권 침해에 대해 생명을 지키려는 최후의 자위권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는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왕산 개발을 허용하라 !
2. 정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

3. 일부 언론은 현지조사등 객관성 입증없이 환경부와 그 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태도를 즉각 중지하라 !

4. 발왕산 개발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적극 개발 되어야 한다.

평창군 의회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될 때까지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 할것을 숙연히 맹세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의 하는 바이다.

## 2. 제안이유

'99년 개최될 예정인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군내에 위치한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93년 12월 쿠웨이트 O.C.A 제12차 총회에서 확정되어 '94년 3월에 강원도가 문화체육부로 유치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슬로프 개발을 위하여 발왕산 일부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단 몇그루의 주목만이 개발 예정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환경이 파괴되는것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또한 동대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원 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즈음에 무책임한 환경부의 정책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여론 호도에 영향을 받은 객관성 없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떠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또다시 강원도 무대접 정서만을 되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자칫 대회 자체가 무산되어 국제적인 망신살이 뺨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작태들을 근절시키고 동대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제정 통과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력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화에 앞장서 국위를 선양키 위해 본 성명서를 작성 채택하여 반대만을 일삼는 관련부처와 단체로 통보하여 본사항들이 관철될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함.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관철을위한

# 성 명 서

우리는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일부계층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

우리 평창군은 84%가 산지로써 산지가 곧 삶의 터전이며 산지개발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부 세력은 곧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려는 자들이다. 그들의 작태에 온몸으로 대항 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단체에서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삶의터전 전체를 보호라는 미명아래 모든 개발을 억제하여 낙후는 물론 생존권에도 막대한 침해를 입혀 왔으나 숨죽여 살아 왔다.

그러나 그간의 낙후되고 허덕이는 경제를 살리고 아름다운 고향의 산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자존과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 하여, 그간의 한을 달래고자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우매하고 형평성 잃은 환경부와 일부단체, 소수 국회의원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다시 동계아시아경기대회마저 무산 될 위기에 처해있다.

강원도에서 '95년 5월 환경전문가들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환경부의 의견을 대폭수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80%나 축소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슬로프개발 예정지내에 있는 주목 7그루만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주목이 발왕산에만 있고 슬로프가 조성되면 이지역의 주목이 모두 훼손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일부 언론도 정확한 검증없이 일방의 주장에만 편을들어 우리의 생존권 말살에 동조하고 있다.

전북의 덕유산은 국립공원 지역인데도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천연보호림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해 주고 우리군의 경우는 당치도 않은 트집을 잡아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모든 대회의 유치를 전북 무주로 하려는 음흉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생존권 침해에 대해 생명을 지키려는 최후의 자위권 차원에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는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왕산 개발을 허용하라 !
2. 정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
3. 일부 언론은 현지조사등 객관성 입증없이 환경부와 그 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태도를 즉각 중지하라 !
4. 발왕산개발은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적극 개발 되어야 한다.

평창군 의회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될 때까지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 할것을 숙연히 맹세 하고 행동으로 옮길것을 결의 하는 바이다.

1995. 12.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 평창군의회 의원 합동연수에 관한동의

의안 번호	49
----------	----

발의년월일 : 1995년 12월 일

제안자 : 김 두 경 의원의외3인

## 1. 주 문

제2대 의회운영을 결산하고,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관철 될 수 있도록, 현지지원 활동을 위하여, 중요안건 심사가 끝나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의원 합동연수를 실시한다

## 2. 제안이유

의원 합동연수를 통하여 의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 사항을 결산하여,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향후 의회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관철 시키기 위한 현지활동을 위하여 의원 합동연수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는 것임.

'95의정활동결산등을위한  
동 계 의 원 합 동 연 수 계 획

평 창 군 의 회

# '95의정활동결산등을위한 동 계 의 원 합 동 연 수 계 획

- 의원연수를 통하여
  -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 한해의 의정활동사항을 결산하며
  -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향후 의회운영 방향을 설정함.

## 1. 연수개요

- 일 정 : '95. 12. 17 ~ 19 (2박 3일)
- 장 소 : 국회의사당 외 1개소
- 참석인원 : 10명 (의원 8, 직원 2)
- 주요내용
  - 의회운영 실무연수 : 지방의회운영은 이렇게 (자체편집책자)
  - '95회기운영에 관한 토론 : 정기회 중심
  -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득려

## 2. 세부계획

- 가. 연수일정 : 별지 연수일정표 참조
- 나. 의원 실무연수
  - 일 정 : '95. 12. 18 ~ 12. 20 (2일간)
  - 장 소 : 수안보온천(상록호텔 소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 (의원 8, 직원 2)

○ 연수내용

- '95 정기회 운영전반 (사례발표)

- 의원 실무연수 (지방의회 운영등 책자 활용)

다.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국회 관철 활동

○ 일 시 : '95. 12. 18(월)

○ 장 소 : 국회의사당등

○ 대 상 : 국회 특위 전위원

○ 주요내용

- 국회의원 개별 면담 설득

- 국회 주요당직자 면담 관찰 촉구

라. 차량 이용계획

○ 소요대수 : 봉고차 1대

○ 승차인원 : 10명

마. 소요경비 확보

○ 과 목 : 의원경비 (보상금)

○ 소 요 액 : 1,600천원

- 1인당 200천원 기준 (2박3일)

※ 지역출신 인사 초청 만찬비 포함

—— 1995年度 ——

# 行政事務監事 結果報告

平昌郡議會

#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 기간	2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2
4. 감사 실시 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일정 및 장소	3
다. 감사 방법	4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5
가. 소관별 실시 내용	5
6. 감사결과 처리의견	17
가. 시정및처리요구사항	17
나. 건 의 사 항	24
7. 기타 특기 사항	26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의 민주성·능률성·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95. 11. 27 ~ 12. 2(6일간)

## 3. 감사대상기관

가.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나. 하부행정기관

##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편성

○ 위원장 : 김종영 위원      ○ 간 사 : 유돈문 위원

○ 위 원 : 이경진, 이상훈, 이수현, 김두경, 우강호 위원

나. 사무보조: 전문위원 신교선의 4명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일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5.11.27(월) 10:00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 청 대회의실	
95.11.28(화) 10:00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	
95.11.29(수) 10:00	○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	
95.11.30(목) 10:00	○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	
95.12. 1(금) 10:00	○ 축산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	
95.12. 2(토) 10:00	○ 위생환경사업소, 강평	"	

## 다. 감사방법

1) 방 법 :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

2) 감사진행

-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위원별로 검토
- 감사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 소관별로 부서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
- 감사 위원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답변후 필요부분은 별도 자료 제출요구 함.
- 감사사항별로 결과를 면밀히 분석 시정·처리·건의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

## 5.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가. 소관별 실시내용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p>기 획 실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li> <li>2. 년도별 지방채무 현황</li> <li>3.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li> <li>4. 예비비예산 운용지출 내역</li> <li>5. 풀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 내역</li> <li>6. 자매결연등 국제교류 현황</li> <li>7. 행정소송 접수 현황및 진행 상황</li> <li>8. 평창군종합개발 10개년 계획</li> <li>9. '94,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li> <li>10. '94, '95년도 의회의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li> <li>11. 5개년 중장기 재정계획 및 활용실태(읍면별)</li> <li>12. 종합월동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li> <li>13.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사업장별)</li> </o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문화공보실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평스키장 문제 및 관리 현황</li> <li>2. 문화예술회관 입찰에 관한 사항</li> <li>3. 평창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예산 집행현황 과 설계변경 내역</li> <li>4. 노성제 예산집행 내역및 예산 지원 현황</li> <li>5. 노성제 경품행사 예산 집행 내역</li> <li>6.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및 지원 현황</li> <li>7.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내용 및 관광객 유치 위한 실제적 활동실적</li> <li>8. 비지정관광지별 운영 실태및 입장료 징수현황</li> </ol>	
내 무 과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사회단체및 타기관 예산 지원 현황</li> <li>2.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 지출현황</li> <li>3. 공중정보통신망회선 DNS MODE 시설 설치현황</li> <li>4. 군수, 부군수 특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li> <li>5. 평창군 직제및 정·현원 현황</li> <li>6.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li> <li>7. 직장체육활동비 지원 내역</li> </o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8. '94. '95직원 상벌대장및 포상자 공적내용 9. 평창군의 기관별 일용직 고용현황 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실태및 처리건수 11. '95군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2. 기관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사회진흥과 (9)	1. 용평리조트 골프장에 사용되는 연간 농약량? 2. 농어촌마을길포장 사업 현황 3. 봉평도읍정비사업 년도별 사업계획대 추진 현황 4. 도민체전 출전예산및 지출내역 5. 위험소교량 파악 현황 6. '95새마을지회 예산지원 내역 7. 옥외 광고물 인·허가 대장 8. 청소년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9.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미포장 현황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재 무 과 (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유지 매각 현황과 취득, 관리현황</li> <li>2. 지방세 세목별 부과및 결손처분 현황</li> <li>3. 수입증지 관리 현황</li> <li>4.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 - 대지분, 농경지분, 임야분, 잡종재산등의 연도별, 읍면별</li> <li>5. 사용료 징수 교부금(하천 골재 낙찰차액, 모래자갈 현황) 현황</li> <li>6.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li> <li>7. 국도비 보조금 관리현황</li> <li>8. 관내 별장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li> <li>9. 평창경찰서부지 확보 예산 집행내역</li> <li>10. 용평리조트, 보광 지방세 징수 내역</li> <li>11. 관내법인 소유토지 현황및 세무조사 실시내역 과 법인체 지방세 납부 현황</li> <li>12. '94. '95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계획대 비 실적 현황</li> <li>13.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내역</li> </o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지 적 과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상황</li> <li>2. '95 개발부담금 내역</li> <li>3. 특별조치법대상 필지 및 실적 현황</li> </ol>	
사 회 과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호물자및 성금품의 접수 관리내역</li> <li>2. '95년도 사회과에서 처리한인·허가 관리현황</li> <li>3.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현황</li> <li>4.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li> <li>5. 각읍면별 접객업소 위생검사 현황및 처리결과</li> </ol>	
환경보호과 (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li> <li>2. 대화쓰레기 소각로 예산집행 내역</li> <li>3.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li> <li>4. 오수처리시설(농촌)설치 기준과 기시설현황 및 향후 대책</li> <li>5. 농촌오수처리장 현황</li> <li>6. 오대천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 대책 현황</li> <li>7. 쓰레기매립장및 소각장 운영현황(광역포함)</li> <li>8. 송정택지 오·폐수처리장 결산 내역과 현재의 운영상태및 문제점</li> </o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9. 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계획과 향후대책 10. '95자연환경명예 지도관 위촉 사항 11. 행락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	
가정복지과 (7)	1.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 2. 경노당 운영비 지원 내역 3. 보육시설운영 현황 4. 어린이집등 아동복지 시설 지원 내역 5. 부녀복지 투자사업 내역 6. 공설묘지 조성사업 현황및 추진 상황 7. 어려운 생활의 청소년 보호지원 현황	
산 업 과 (14)	1. 농지전용신청 민원증 불허처분한 현황 및 사 유 2. 농산물 집하장, 공판장 시설현황및 사업내역 3. '95비가림재배하우스 현황 및 지원 내역 4.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회동,재산) 내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5. 읍면별 저온저장고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6. 농업단체 현황및 지원 내역 7. 농작물 재해대책 현황 8. 농지전용허가 내용및 전용비 내역 9. 농어촌발전기금등 용자금 지원단체및개인현황 10. 명품가공 시범사업 추진 상황 11. '95경쟁력 재고사업 추진 현황 12. 발토양 정밀검정 추진 현황 13. '95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 현황 14. '95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내역	
지역경제과 (7)	1. 평창농공단지 조성, 현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보완 대책 2. 시장개설 및 관리 상황 3. 벽지노선 인·허가 실태및 계획 4. 운수사업 지원 내역 5. 주차감시원 인원, 직급및 배치 현황 6. 개인택시 허가 내역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한 내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축 산 과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지조성 허가내역 및 사후관리현황</li> <li>2. 송어치어장 인·허가 처리 현황</li> <li>3. 송어양식장 오·폐수처리장 및 예산지원 현황</li> <li>4.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li> <li>5. 젓소 경쟁력사업 추진현황</li> <li>6. 가축방역약품구입관리 현황</li> <li>7. 대단위 양돈단지사업 추진현황</li> <li>8.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지원 내역</li> <li>9. 축산기금 용자 현황및 관리 상황</li> </ol>	
산 립 과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4, '95 조림지 사후관리 (추비,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쿨제거, 검목)에 대한 지출내역</li> <li>2. 무궁화, 야생화, 목류 가로수 식재 관리내역</li> <li>3. 산림훼손, 토석채취, 수목굴취 허가및 사후관리 내역</li> <li>4.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감독현황</li> <li>5.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및 체납현황</li> <li>6. '94, '95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li> </o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94, '95 산림조합(임협)에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내역</li> <li>8. 솔잎혹파리 피해목 현황 및 벌채면적과 미벌채에 대한 향후 대책</li> <li>9. '94. '95임도시설 피해상황 및 보수현황과 피해복구 및 '95 피해보상 대책</li> <li>10. 불법 산림훼손및 산림사범 단속처리 현황</li> <li>11. 임업 후계자별 지원금 및 용자 내역</li> <li>12. 산림개발 관련 용자금 지원단체 및 지원 현황</li> </ul>	
<p>건 설 과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내역</li> <li>2.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li> <li>3.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li> <li>4. 위험교량 실태 조사 내역</li> <li>5. 금당계곡 군립공원화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li> <li>6. '95 이월사업 내역</li> <li>7. '94, '95하천감시원 명단 및 예산 지급내역</li> <li>8. '95경지정리 사업별 내역</li> <li>9. '95수해피해지구 사업 계획서 및 복구계획 현황</li> </u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군도 노선별에 대한 년도별 투자 계획</li> <li>11. 농어촌도로 노선별 년도별 투자 계획</li> <li>12. 방제사업표지판, 현수막등의 총수량 및 소요 예산</li> <li>13. 수해위험지역 조사 현황</li> <li>14. '95 수해피해지구사업, 보상계획서 및 현황</li> <li>15. 수해상습지 및 취약지 대책</li> <li>16. 8월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및 구호품 접수 내역</li> <li>17.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내역</li> </ul>	
<p>도 시 과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구역내 계획대 도로개발 불가능지역 현황</li> <li>2.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li> <li>3. 상·하수도 사업 현황</li> <li>4.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li> <li>5. 농촌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현황</li> <li>6. 미탄상수도 수질검사 평가서</li> <li>7. 평창 달동네 정비사업 현황</li> </u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li> <li>9. 주택은행의 채무액 원금 및 이자현황</li> <li>10. 대화시까지 하수도 정비계획추진 상황및 뒷골목 포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및 관계서류</li> <li>11. 건축법의 허가, 신고, 신청에 대한 관계법령 제시및 설명자료</li> <li>12. '95농촌주택융자금 지원내역</li> <li>13. 대화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 진행상황, 확정계획</li> <li>14. 국민주택 년도별 융자금 상환 현황</li> <li>15. 봉평상수도 시설 추진 계획및 대책</li> <li>16. 송정택지개발사업</li> <li>17. 간이상수도사업 예산 집행 내역</li> <li>18. 소도읍,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내역</li> <li>19. 상수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li> </ul>	
<p>민 방 위 과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5년도 공익근무자 현황</li> </ul>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보건의료원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관리 현황</li> <li>2. 의약품 구입현황('94, '95년도분)</li> <li>3. 관내 보건지소 정·현원 현황</li> <li>4. 보건의료원 정·현원 현황</li> <li>5. 공중보건의 복무 규정 및 불이행자 조치 현황</li> <li>6. '95재료비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내역</li> <li>7. 보건의료원 운영 실태</li> </ol>	
농촌지도소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읍면1특화 작목 개발 추진 내역</li> <li>2. '94, '95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현황</li> <li>3. 농민후계자 현황(읍면별)과 지원 내역</li> </ol>	
공 통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사업의 부대비 집행내역 (사업비 5,000만원 이상)</li> </ol>	

## 6. 감사결과처리 의견

###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일부 읍면에 편중됨이 없이 전 읍·면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 각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시는 평창군종합개발10개년계획 및 '9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획등의 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결정하여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게 투자되는 사업들이 다수있는바 향후 투자사업 계획은 당위성이 확보된 사업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3) 석유판매가격은 고시된 금액에 판매 되는 반면, 가스요금은 배달조건을 붙여 거리 병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및 규제가 필요할 것 임.
- 4) '95 노성제 행사시 경품추첨 부분은 군민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었으므로 군민 화합 차원에서 다른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 5) 평창군은 문화예술관광단지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지역주민의 의견, 업체의 의견, 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 됨.

- 6)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하절기에 악취와 실내 고온으로 대부분 이용치 않고 있어 시설 개선이 요구 됨.
- 7) 미탄면과 정선군의 경계지점에 정선군의 안내판이 평창군 지역에 설치 되어 있어 조속히 시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관내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이 정선군과 비교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정비 대책이 요구 됨.
- 8) 군이 위촉한 명예감독관 및 모니터요원중 이·반장을 제외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요원을 대상으로 년차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할 필요가 있음.
- 9)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시 법규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필요이상의 서류(지역주민 동의서등)를 첨부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행태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 됨.
- 10) 평창노성정 건립을 궁도협회 부담금 5,000만원과 군예산 2억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궁도협회 부담금 5,000만원을 군 금고에 입금 조치후 총액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궁도협회 부담을 경감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향후 자부담금이 포함된 각종 사업 시행시는 자부담을 인수 총액에 의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 바람.

- 11)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의 농약구매와 관련 관내 농약상들을 이용  
토록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농약수급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12) 도민체전출전용 물품구매에 있어 다년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저질품을  
고액 구매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을 평창읍내 업체로 한정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다수있는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시정이 요구  
됨.
  
- 13)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사업비를 확보 재원대책 없이 추가입찰  
에 의한 사업시행이 매년 거듭되고 있음.  
이는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을 가중케 함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바,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임.
  
- 14) 평창군 관내 부녀회의 교육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강습 및 교육실시에 있어, 전부녀회원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별 장소 선정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임.
  
- 15) 공설묘지가 읍면별로 몇군데씩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것이 오지지역  
으로 이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임.  
현 공설묘지 지정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

- 16) 현재 평창읍과 대화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수식당등을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내 전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볼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7) 현 관광농원은 사업주체자만 경영수익을 보고 있는바, 다수의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18) 농어민후계자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선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농어민후계자 선정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사에 전력을 다 할수 있는 농민이 선정 되도록 철저한 운영, 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 됨.
- 19) 경찰서부지 매입 관련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사업완료 후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환 조건일 경우 현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을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전 군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재는 기업체가 취득하고,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세금부과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세원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 21) 군유지 및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필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차 이행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바람.
- 22) 부동산중개업자 및 부동산공인중개사등이 고시되어 있는 중개 수수료 보다 과도한 중개료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특단의 관리·감독이 요구 됨.
- 23) 지적등본을 발급 받을시 가로 17Cm, 세로 20Cm의 한매당 500원의 증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필지를 이어서 붙이는 경우에는 현행 1,000원의 증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조속히 시정 되도록 하기 바람.
- 24) 복지회관이나 장애인협회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단체임에도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 25) 현재 환경미화원 배치는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치 않고 배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등의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환경미화원을 재조정 배치 할 필요가 있음
- 26) 관내 수계별 생태계에 대한 기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개발 업체에 대해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하는등 특단의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7) 발기반정비사업은 전읍면이 사업을 희망하는바, 사업장 선정시 읍면별 형평을 고려 하여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 28) 국도와 군청 진입도로 분기점부터 중부교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사고 유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바, 조속히 인도를 설치하는등의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9) 미탄상수도 집수정의 설계상 하자로 취수 본관은 50mm이나 급수 본관이 100mm로 송수관로 규격이 불합리하여 정전시 담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식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바 이에 대한 재검토 시행이 요구 됨.
- 30) 대형건축물 허가시는 관계공무원이 사전 현지확인을 철저히 확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허가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31) 관내에 방치된 공가가 많아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바 ,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리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됨.
- 32) 대화면 신리 양돈단지조성등은 인근 지역에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과 연계한 소득작용이 없고, 여름철 악취와 해충으로 환경문제가 대두 되는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으므로 사업성 재검토와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3) 하천변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전무하여, 우기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류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단속이 요구 되고 있음.

34) 대민행정 10대시책사항중 이동보건의료원 운영실적이 '94년과, '95년 비교시 '95년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방제실시 현황 및 성인병 보건교육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바, 실질적인 활동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5)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 '94년 52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사례를 낳고 있음. 동사업등은 철저히 성과분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36)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들의 애매모호한 소신없는 답변, 업무 파악 소홀등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임.

37) 소관별 국·도비 미착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착금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나. 건의사항

- 1) 방림지역의 경우 난시청 해소를 위해 군 예산 780만원을 들여 유선방송시설을 하였으나 최근 문화방송은 화질이 더욱 나빠졌다는 여론이 있는바, 관내 전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등의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바람.
- 2) 경로당운영비 지원금중 월 난방비 150천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므로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적극 모색 되어야 할 것임.
- 3) 지적측량관련 민원이 지적공사 인력부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어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지적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이 처리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됨.
- 4)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행정기관이 할 때는 청결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자율지도 이후 업소관리가 미흡한 바, 자율지도는 계속 실시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소의 청결,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5) 현재 하예작업을 국비 60%, 자부담 40%로 시행 하면서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 지원금으로 대부분 하예작업을 실시하므로 부실하게 작업이 되고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원활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6) 현행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임협과 수의계약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감독이 소홀하여 발생하는 하자부분은 철저히 원인을 규명, 재시공등으로 군의 재정 손실을 사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시행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7)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농경지피해, 임도시설피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피해등, 사업 주관 부서간 적용하는 법규가 상이하여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립이 필요하므로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분석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8) 일부 송어양식장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갈수기에 하류지역에 물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바,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내수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9) 사회교육법상 엄격히 따져 인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강사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실시하는 교육은 불법행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학교육에 대해 강사의 자질 및 교육방법을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10) 공설묘지조성사업비 1,470백만원은 현실적으로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가중케 하는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책이 요구됨.

- 11) 균유지 매각시는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되나, 매입시에는 공시지가의 배이상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관계법규를 면밀히 분석, 재산관리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7. 기타특기사항

— 없 음 —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주 요 골 자

-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안 제4조)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함.  
(안 제37조의2)
- 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군지역에서는 400 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 (안 제39조의 2)
- 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9조의 3)
- 마.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56조)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1급 관사에 한함 ⇒ 1. 2급 관사에 한함 )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 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제1호중 "직할시" 를 "광역시" 로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로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중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예정가액 2억5천만원 이상</li> <li>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li> </ol> <p>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p> <p>③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써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li> <li>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li> <li>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li> <li>4. 당해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제 &gt;</p>



현행	개정
<p>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p> <p>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 - - - -  - - - - -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 - - - -  - - - - -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 - - - -  - - - - -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 까지 - -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등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lt; 삭제 &gt;</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액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lt; 삭제 &gt;</p>



현행	개정
<p>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 3. (생략)</p> <p><u>&lt; 신 설 &gt;</u></p> <p>제56조(관사운영비의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삭 제</u></p> <p>6. <u>전화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u></p> <p>7. <u>삭 제</u></p> <p>8. <u>삭 제</u></p>	<p>----- ----- 기타지역에서 <u>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u> 얻어야 한다.</p> <p>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u></p> <p>6. <u>전화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u></p> <p>7. <u>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u></p> <p>8. <u>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u></p>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95. 5. 16>

1.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 번호	37
----------	----

제출년월일 : 1995.12. .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94. 12. 21. 평창군의회에서 동의 의결된 1995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변경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군유지 1필지 1,000㎡(300평)내에, 건축물 600㎡(180평)를 신축하여 건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함.

## 3. 관계법규및지침

가. 지방자치법 제 35 조

나. 지방재정법 제 77 조 동법시행령 제 84 조

다. 평창군 공유재산조례 제 37 조 및 동시행규칙 제 29 조

라. 강원도 가정 65240-667('95.11.27)호 「'95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합 계			'95당초및1차변경			'95. 2차변경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568	2,499,784	4,617,249	568	2,499,784	4,617,249			
		건물	7	9,813	8,210,826	6	9,213	7,836,600	1	600	374,220
		기타									
	1) 매입	토지	442	152,579	3,444,731	442	152,579	3,444,731			
		건물	7	9,813	8,210,820	6	9,213	7,836,600	1	600	374,220
		기타									
2) 교환 취득	토지	126	2,347,205	1,172,518	126	2,347,205	1,172,518				
	건물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취 분	계	토지	76	2,366,392	5,319,290	76	2,366,392	5,319,290			
		건물	3	593	49,922	3	593	49,922			
	1) 매각	토지	23	39,512	4,137,445	23	39,512	4,137,445			
		건물	1	120	7,808	1	120	7,808			
	2) 교환 매각 철거	토지	53	2,326,880	1,181,845	53	2,326,880	1,181,845			
		건물	2	473	42,114	2	473	42,114			
기타	기타										
대 부	토	지	545	690,297		545	690,297				
	건	물	5	555		5	555				
	기	타	56	94,331		56	94,331				

# 1995년도 취득재산목록(7-2)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지 주 소 성 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432필지	148,163	3,082,817			
	건물	3 동	1,450	636,170			
	기타						
1	건물	용평면 장평380	600	374,220	'95 하반기	노인종합복 지회관건립	평 창 군

# 관 련 법 규

## 가. 지방자치법 제 35 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나. 지방재정법 제 77 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 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것으로 본다.

## 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95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부표

○ 강원도 신청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사본 ————— 1~2

○ 취득재산 위치도(1/50,000) 및 지적도 ————— 3~4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15 /전화 (0361) 57-5076 담 당 : 정 준 호

문서번호 가정 65240 - 667

시행일자 1995. 11. 27(3년)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가정복지과장

선결	공수	128명	지시	
접	일시	1995. 11. 27	결재·공함	부은수
수	번호	1212		과장
처리과	가정복지과			박상진
담당자	김진영		계장	이민호

~~가정복지과장 김진영~~

1. 노인 65240-491 ('95.9.14) 호와 관련입니다.

2. 위관련호로 내시된 '95.국고보조사업중 아래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변경내시하니 시군비 확보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변경내시내역

사업명 : 노인복지회관 신축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군						
계	1개소 (180평)	374,220	187,110	93,555	93,555	국비50%, 도50% 시군비50%
동해시	△1개소	△374,220	△187,110	△93,555	△93,555	건립포기
평창군	1개소	374,220	187,110	93,555	93,555	신규지정

끝.

강 원 도 지

가정복지과장 전결



수신처 : 더(04, ①)

#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15 /전화 (0361) 57-5076 담 당 : 정 준 호

문서번호 가정 65240 -57x

시행일자 1995. 10. 19 ( 3년 )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가정복지과장

시절	군수 <b>정용우</b>	지시			
접수	일시	결재·공급	부군수 <b>박상만</b>		
	번호			과장 <b>박정민</b>	
	처리과		계장 <b>이노</b>		
	담당자				

계 목 ~~노인종합복지타운건설추진사업~~

재무과장  
경제계장  
기획실장  
여성계장

1. 중앙지침에 의거 '96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코자하니 다음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95. 10. 25한 신청하기 바람.

## 2. 사업내역

사업명	개소수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노인종합복지 타운건설	1	500평	1,089,000	1,089,000		
노인복지회관 건설	1	180 "	374,220	187,100	93,555	93,555

※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한하여 건축비만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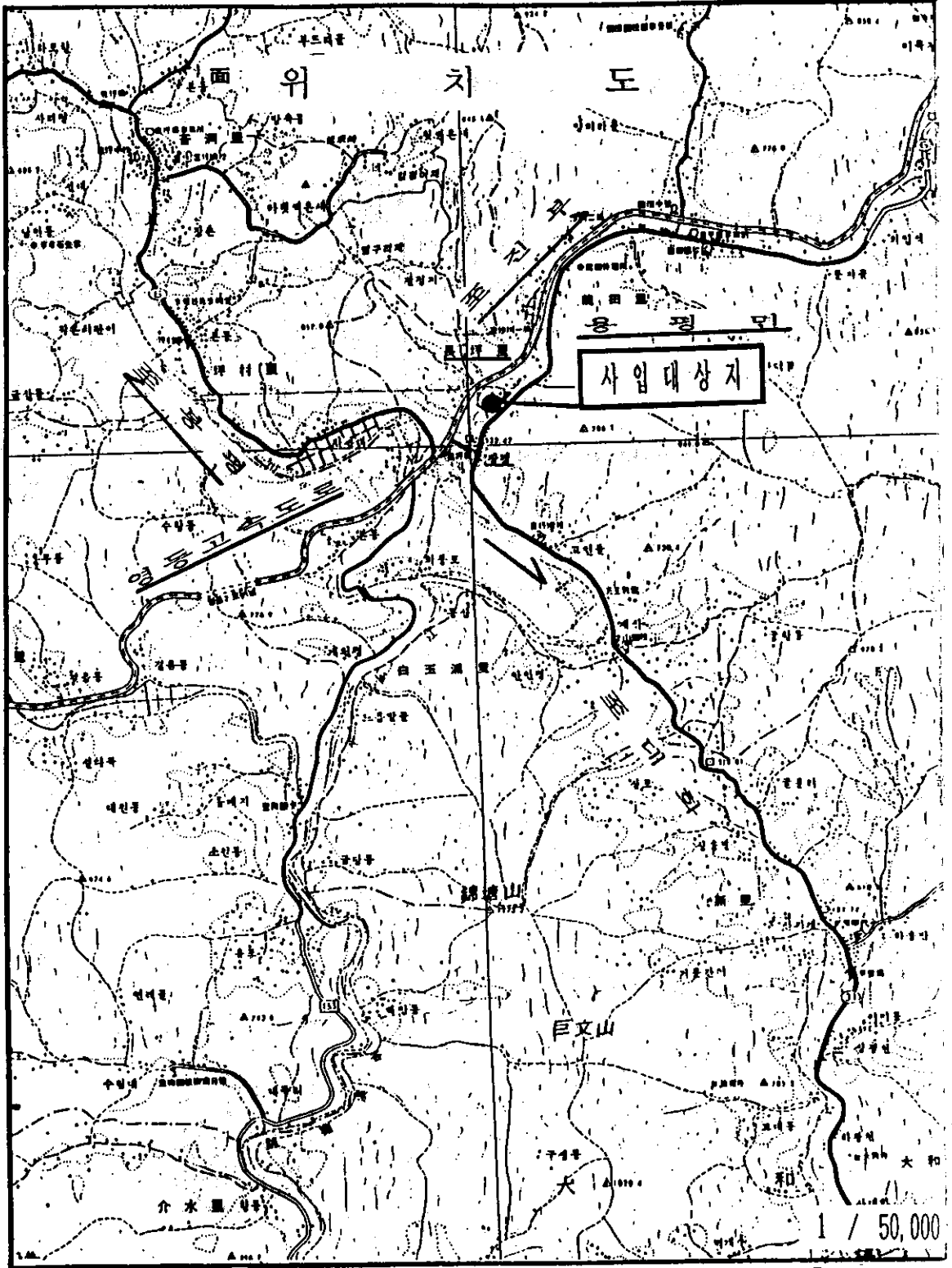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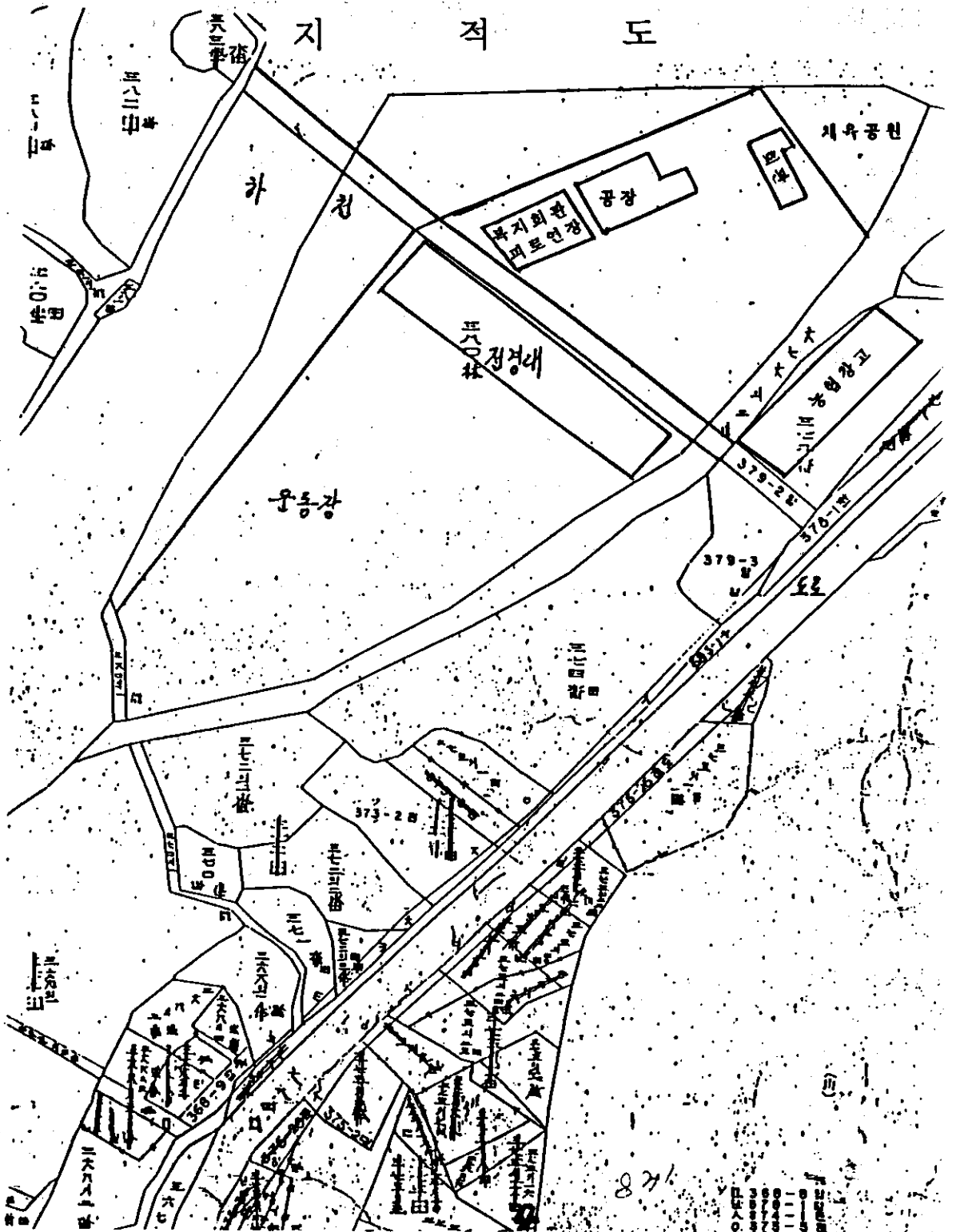
강 원 도 지



가정복지과장 전결

수신처 : 너(01-18)





#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강원도 회계 13330-1254 (95. 8. 8)호 「1996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친 「1996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함.

## 2. 주요골자

1996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취득·처분재산은 총 3건에 20,272㎡로서, 취득재산의 토지는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부지 1개소 12필지에 15,907㎡이며, 건물 신규 취득 2건의 4,365㎡는 종합민원실 신축 1,650㎡와 평창읍 여만리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2,715㎡ 임.

## 3. 관계법규 및 지침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

나. 평창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

다. 1996 공유재산 관리 작성기준

#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평      창      군

# 총 관 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구 분			합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1	15,907	249,000	1	15,907	249,000			
		건물 기타	2	4,365	1,622,235	1	1,650	1,100,000	1	2,715	522,235
	매 입	토지	1	15,907	249,000	1	15,907	249,000			
		건물 기타	2	4,365	1,622,235	1	1,650	1,100,000	1	2,715	522,235
특	2) 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 교 환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대 부	토건기	지물타									



# 1996년도 취득재산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개	토지	12 필지	15,907	249,000			
	건물	2 건	4,365	1,622,235			
1	전	평창 종부 508-69	1,464	22,917	상반기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평창읍 하리 58-19 조 인 지
2	"	평창 종부 508-74	1,160	18,158	"	"	평창읍 중리 33 조 명 현
3	답	평창 종부 508-76	142	2,223	"	"	"
4	진	평창 종부 508-77	1,587	24,842	"	"	평창읍 하리 58 최 남 식
5	답	평창 종부 965	896	14,025	"	"	평창읍 하리 58 장 순 자
6	전	평창 종부 966	641	10,034	"	"	평창읍 하리 318 조 영 배
7	"	평창 종부 967	2,102	32,904	"	"	평창읍 하리 58 최 남 식
8	답	평창 종부 968	1,455	22,776	"	"	평창읍 하리 58 장 순 자
9	"	평창 종부 969	1,088	17,031	"	"	"
10	전	평창 종부 971	1,931	30,227	"	"	평창읍 하리 112-12 안 영 실

일련 번호	재 산 외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1	전	평창 종부 982	764	11,959	상반기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평창읍 하리 61-1 김 승 환
12	"	평창 종부 983	2,677	41,904	"	"	"
13	건물	평창 하리 210-2	1,650	1,100,000	"	종합민원실 신축	평 창 군
14	"	평창 여만 357-6	2,715	522,235	하반기	지역농업개발 센터 신축	평 창 군
			이			상	

# '96 공유재산관리계획부표

1. 관계법규 (초)	1
2.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2 ~ 16
3. '96 예산안	17 ~ 21
4. 취득재산별 위치도	22 ~ 24

# 1. 관 계 법 규 ( 초 )

## ○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6. 重要財産의 취득·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 ○ 지방재정법

(별)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算料과 事業豫定에 따라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管理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영)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600백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 강 원 도

우 200-700/춘천시 봉의동 15-1번지/전화(0361)55-4392(행)2341 FAX(0361)50-2425 담당:김상욱

문서번호 회계 13330 - 1254  
시행일자 1995. 8. 8. ( 3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1995. 8. 09	시	
수	번호 836	결	2015
처 리 과	재무과	재	
담 당 자		공	
		람	

제목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시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강 원 도 지

**내무국장 전결**



수신처 : 거, 너, 더.

“은국민이 관광요원 꽃피우는 민간외교”

1996年度

# 公有財産管理計劃 作成基準

江 原 道

# 목 차

1. 목 적
2. 기본방향
3. 대상재산
4. 재산의 취득기준
5. 재산의 처분기준
  - 가. 재산의 처분요건
  - 나. 재산의 매각기준
    - (1)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 (2)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 (4) 매각의 제한
  - 다. 재산의 교환기준
  - 라. 재산의 양여기준
6. 행정사항

##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등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처분결과의 보고범위·서식등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본방향

- 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은 증대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한다
- 나. 장래 행정수요 및 국민복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보존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등 처분을 억제하여 공유재산으로 존치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행정·보존 및 복지수요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 다.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보존부적합한 영세한 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한다
- 라. 매각요건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매각하기보다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교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산의 매각을 최소화한다



### 3. 대상재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다만, 등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96년도에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코자 하는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귀속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5. 재산의 처분기준

가. 재산의 처분요건

- (1)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양여, 멸실, 교환등을 하는 때
-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 나. 재산의 매각기준

##### (1)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타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 ③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④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나)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공유재산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등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항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공유재산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 ① 은닉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반환한 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그 재산의 최종 선의취득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②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소유토지상의 건물 및 이 계획에 의거 매각하는 공유토지상에 위치한 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 ②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 ③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하천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가) 지방재정법과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 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적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사업목적에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
-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재산
- ④ 농어촌정비법 제93조 또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⑥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나) 제1항 각호의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및 공공용,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산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시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예정지등 공유지 면적이 취락택지면적의 20%미만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의 재산

④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여 매각 [필지당 면적이(인접한 필지 포함) 기준이상 면적일 경우 기준이내로 분할 매각이 불가하고 장래 행정수요를 취하여 보존]

○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업진흥구역 : 10,000㎡이하(특별시·광역시·시지역은 제외)

· 농업보호구역 : 1,320㎡이하

· 기 타 : 660㎡이하

○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지역 : 660㎡이하

· 시 지역 : 1,320㎡이하

· 농촌지역 : 3,300㎡이하

(나) 농업·주택·공업등 주요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 육성을 위하여 전체면적중 공유지 면적이 20%범위내에서 포함되는 경우

②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아파트지구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공유지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400㎡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장근로자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등재산은 매각후 10년이상 기속사르 활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매각의 제한

위에 열거한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 ②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 ③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 ④ 특정목적(조림, 목축, 초지조성, 골프장용도등)으로 대부한 재산을 수대부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는 경우

#### 다. 재산의 교환기준

-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건물·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건물·기타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 (2) 전항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예 : 토지와 토지간, 건물과 건물간)의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하며,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교환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나) 임야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관리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점유중인 재산의 정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 (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
  - (나) 도시계획법, 도로법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 (나) 장래에 도로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재산의 양여기준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를 포함)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3) 도시계획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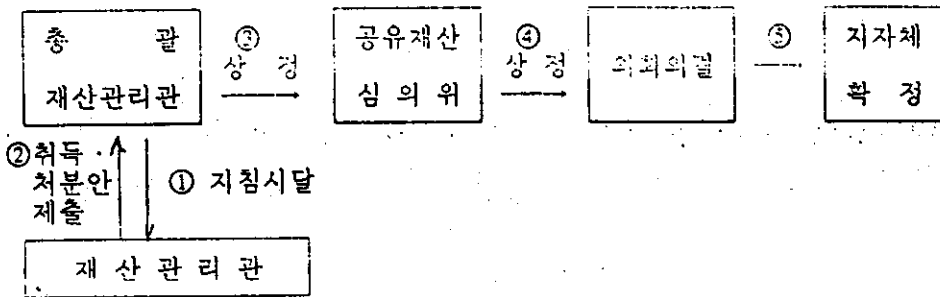
※ 양여단체에서는 양여계획에, 양수단체에서는 양수계획에 포함

- (4)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경우

※ 조림목적으로 공유임야를 대부한 경우 조림이 성공하였다하더라도 그 산림을 대부자에게 양여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 삭제)

## 6. 행정사항

### 가. 관리계획 수립 절차



### 나. 관리계획수립 서식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용 및 대부허가란은 삭제하여 운영)

### 다. 관리계획 확정 보고

- 보고일자 : 의회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시·군 → 도)
- 보고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
- 보고서식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  
(7-1 - 7-5 포함)

○ 결과조치 : 위법·부당한 취득·처분 지도 감독

라. 취득·처분 결과보고

○ 보고일자 : 취득·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시·군 → 도)

○ 보고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

○ 보고서식 : 별첨서식

○ 결과조치 : 위법·부당한 취득·처분 지도감독

마. 관리계획의 변경 및 보고

○ '96년도중 추경예산편성으로 주요시책사업이 추가시행되는 등으로 연도중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관리계획 작성과 보고 요령과 같이 처리

1996년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예입 · 세출예산서 (안)

부 :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주 의 사 업 특 별 회 계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주민소득자금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평 창 군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전및생태환경개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청소관리

세세항: (200)사업예산

과		예산액	연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 세세항	목				
					400,000,000원x3.6/100 = 14,400
		269,093	0	269,093	03 토지매입비 ○ 병창쓰레기매립장인근부지매입비(15,907㎡) = 249,000 ○ 미탄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기존매립장) 7,100원x2,830㎡ = 20,093
		40,000	7,200	432,800	04 시설비 ○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 = 400,000 ○ 대화쓰레기매립장진입로포장(400m) = 40,000
		2,000	1,000	1,000	05 시설부대비 ○ 대화쓰레기매립간조성 = 2,000
		8,280	0	8,280	06 감리비 ○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에 따른 감리비 = 8,280
	405 자산취득비	35,000	0	35,000	
		35,000	0	35,000	01 자산취득비 ○ 압축진개청소차구입 35,000,000원x1대 = 35,000
	2223 상하수관리	1,515,260	121,429	1,393,831	
	200 사업예산	1,515,260	41,429	1,473,831	
	250 자체 (신규) 사업	1,515,260	20,000	1,495,260	

장: (1000) 일반행정

관: (1200) 일반행정비

원: (1250) 사무행정

세항: (1253) 재산관리

세세항: (200) 사업예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0,000	855,200	△855,200	03 토지매입비 ○ 개촌경지정리지구 농모확장에 따른 사유편입토지매입 25,000원x400평 = 10,000
		1,524,500	410,000	1,114,500	04 시설비 ○ 종합민원실 신축 = 600,000 ○ 도암면청사신축 = 914,500 ○ 청사발전기대수선 = 10,000
		3,000	3,000	0	05 시설부대비 ○ 종합민원실신축 = 1,000 ○ 도암면청사신축 = 2,000
		11,919	8,934	2,985	06 감리비 ○ 종합민원실 증축에 따른 감리비 = 11,919

장: (3000) 경제개발

관: (3100) 농수산개발

항: (3130) 농촌진흥

세항: (3131) 사무관리

세세항: (200) 사업예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 세세항	203 여비	952	1,390	△438	
		952	1,390	△438	02 국외여비 ○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 952 {국} 476 {관} 476
220 국고보조 (사업) 사업		560,747	166,756	393,991	
	401 시설비등	555,017	166,756	388,261	
		15,614	3,526	12,088	02 실시설계비 ○ 지역농업개발센터(새기술실증시범포) 296,694,000원x2.6/100 = 7,715 ○ 지역농업개발센터(농기계공작실) 73,426,000원x3.58/100 = 2,629 ○ 농촌지도시설지원(창사증개축) 184,896,000원x2.85/100 = 5,270
		522,235	163,230	359,005	04 시설비 ○ 지역농업개발센터 · 새기술실증시범포 = 280,214 {국} 148,347 {관} 131,867 · 농기계공작실 = 67,998 {국} 36,713 {관} 31,285

장: (3000) 경제개발

관: (3100) 농수산물개발

항: (3130) 농촌진흥

세항: (3131) 사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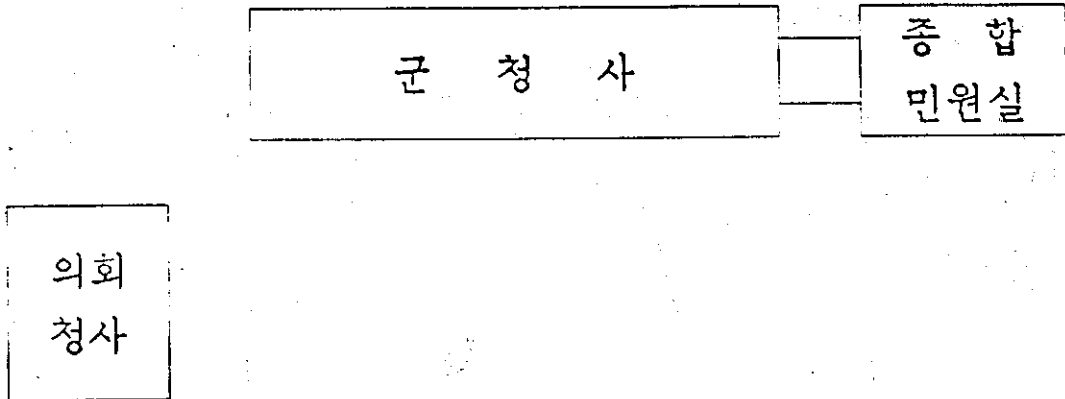
세세항: (200) 사업예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신출기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농촌지도시설(청사증개축) = 174,023 (국) 92,448 (관) 81,575
		3,500	0	3,500	05 시설부대비 ○ 지역농업개발센터(새기술실증시범포) = 2,000 ○ 지역농업개발센터(농기계공작실) = 500 ○ 농촌지도시설(청사증개축) = 1,000
		13,668	0	13,668	06 감리비 ○ 지역농업개발센터(실증시범포) 296,694,000원x2.28/100 = 6,765 ○ 지역농업개발센터(농기계공작실) 73,426,000원x3.13/100 = 2,299 ○ 농촌지도시설(청사증개축) 184,896,000원x2.49/100 = 4,60-
	405 자산취득비	5,730	0	5,730	
		5,730	0	5,730	01 자산취득비 ○ 지역농업개발센터(생활과학실습시설) = 3,550 (국) 1,775 (관) 1,775 ○ 농촌지도장비지원(이륜차) = 2,180 (국) 1,090 (관) 1,090
	250 자체(신규) 사업	10,200	5,000	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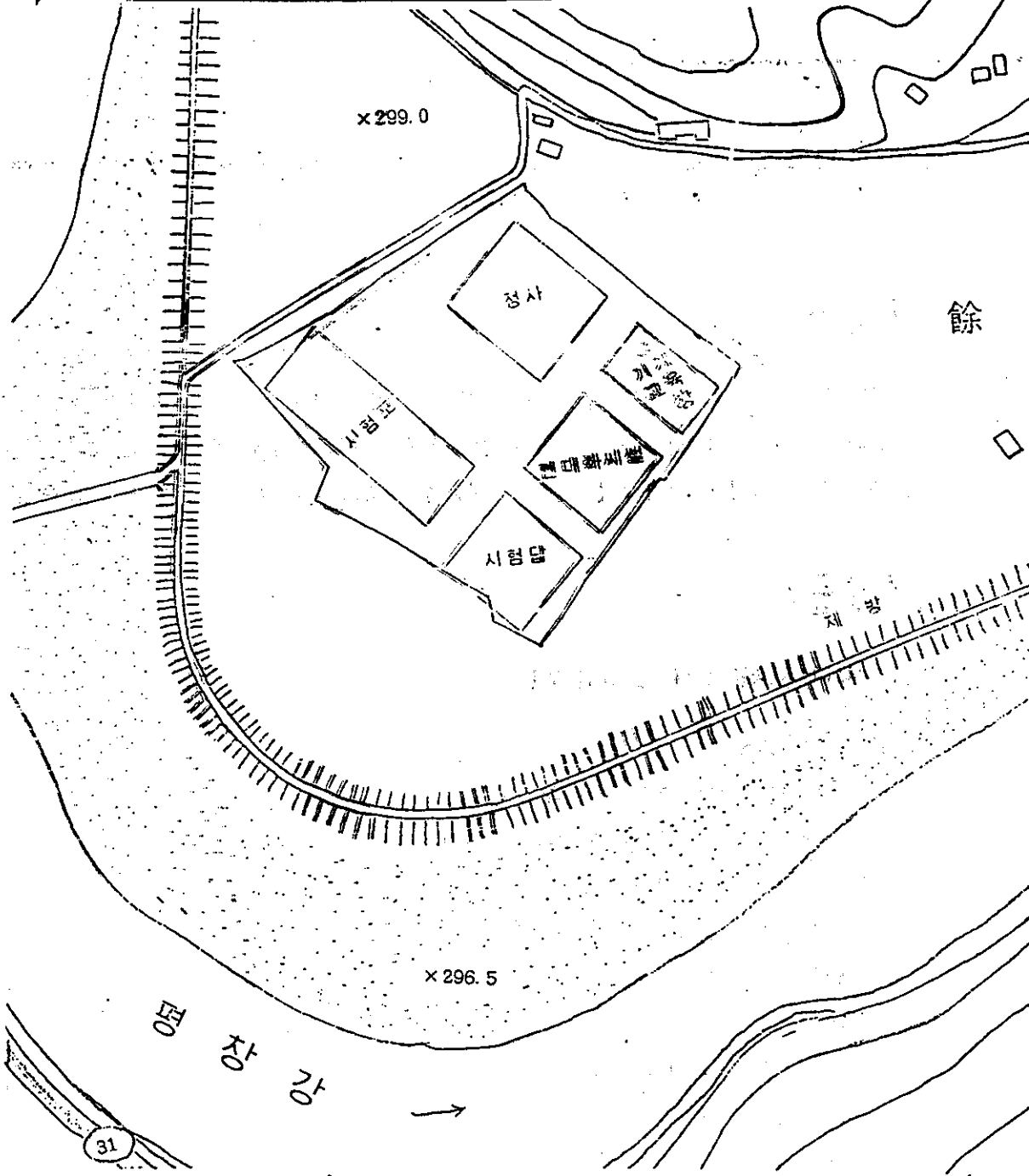




# 위 치 도



# 地域農業開發센터 位置圖



# '9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42
----------	----

제안년월일 : 1995. 12.

제안자 : 평참군수

## 1. 제안사유

관광휴양시설 배후도시인 봉평·면온지역의 개발에 따른 "물"수요대처 및 휴양시설 (휘닉스파크) 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한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 재원을 보충하므로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함.

## 2. 주요골자

### 지방채 차입계획

#### <특별회계>

- 사업명 : 봉평상수도시설확장사업
- 기채규모 : 일십억원 (₩1,000,000,000)
- 기채선 : 재정투융자금
- 기채종류 : 증서차입
- 발행시기 : '95. 12
- 이율 : 6%
- 상환기간 : 5년거체 10년 균분상환
- 상환재원 : 군 배

### 3.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5조(지방채무및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 일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관광휴양시설 배후도시인 봉평. 면온지역의 개발에 따른 "물" 수요대처
- 봉평면지역 휴양시설(휘닉스파크) 건설에 따른 단지내 용수공급

3. 추진경위

- '94. 11 ~ '95. 10. 30 : 실시설계 용역 및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 '95. 11. 15 : 발주
- '95. 12. 13 : 입찰 (예정)

4.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봉평면 일원
- 사업량 : 8,700T/D
- 사업기간 : '94. ~ '97 (4개년)

<사업총괄>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 계획
				계	지방채	지방비			
						시도	시군구	기타	
계		7,600	100	1,900	1,000			900	5,600
보상비	7,000m <sup>2</sup>	98		98				98	
공사비	8,700톤/일	7,402		1,802	1,000			802	5,600
부대비	실시설계 1식	100	100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 계		기 투 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7,600		100		1,900		5,600
보상비	7,000㎡	98			7,000㎡	98		
공사비	8,700톤/일	7,402			도.정수 시설 ·송배수 시설	921 881	취수 시설 ·정수 ·송수 시설	3,200 2,400
부대비	실시설계	100	실시설계	100				

<연도별. 자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계	7,600	100	1,900	5,600
지방채	3,000		1,000	2,000
국비				
시도비	500			500
시군구비	1,950	100		1,850
선수금				
기타	2,150		900	1,2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관광 휴양시설 지구와 배후도시 지역의 "물" 수요 충족
-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에 행정신뢰 제고
- 선진경영 및 원가절감. 주민편익 증대

나. 기채선 :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용자금

다. 기채조건 : 연리 6.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끝.



강 원 도 지



기획관리실장 전결

수신처 : 더(04, 05, 08, 10, 11)



1995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5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5년 12월 11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12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2.14 상정)

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2.15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99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억5,200만원이며 이를 합한 199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 규모는 기정예산 752억8,5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761억 3,700만원임.
- 이중 일반회계는 1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7,800만원이 감소 하였음.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고선)

###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세입은 총 1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 증가 되었음.
- 3회 추경재원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법정교부세 추가교부액 4억4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7억8,600만원등 총 14억9,000만원이 계상 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

- 년도말 인건비 소요액 판단에 따른 예산잔액과 법정의무경비 및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특별회계 전출금등에서 5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함.

-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비 연부액 확보등의 투자적 경비는 20억 68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가 신장 되었음.
- 주요사업내역으로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에 3억원, 차항2리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7억8,6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3억7,4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군비미부담 6억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음.

#### 다. 기타 특별회계

- 총 5개사업에 6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0% 감소 되었음.
- 봉평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주) 보광부담금이 당초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주) 보광과의 당초 협약에 의거 사업 착공시기와 맞추어 이번 3회추경에서 12억5,000만원을 삭감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기재승인이 '95. 12. 7일에 이루어지므로 절차상 의회 동의를 지연 된 것으로 생각됨.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채납액이 과다발생하여 채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음.

####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장비현대화의 추진중임에도 행정정보센터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운영면이나 장비 구입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p>	<p>. 장비구입과정에서 부득이 시설 구입품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익년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음</p>
<p>○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관련 사전 제반운영·관리·사업장 위치등의 사항을 의회와 협의 시행함이 타당한데도 임의로 계획을 책정하고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p>	<p>. 연말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음.</p>
<p>○ 봉평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공사의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부담을 한 이유는?</p>	<p>.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 부담을 한것임.</p>

5. 討論要旨

【 없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

8. 其他 必要한事項

【 없음 】

첨부 : 1.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 1995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40
----------	----

제출년월일 : '95. 12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85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30백만원과 특별회계 △678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6백만원, 지방교부세 704백만원, 보조금 786백만원, 지정재원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84백만원, 사업외수입 △1,400백만원, 보조금 6백만원, 지방채(재특용자) 1,000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348백만원, 물건비 △81백만원, 이전경비 △2백만원, 자본지출 2,068백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 △100백만원, 예비비및기타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8백만원, 이전경비 △273백만원, 자본지출 △264백만원, 용자및출자 △81백만원, 보전재원 △51백만원, 기타 △1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5년도 (3회추경)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 세 출 예산

평 창 군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중 △ 감
계	76,138,118	75,285,734	852,384
일 반 회 계	70,114,494	68,584,141	1,530,353
특 별 회 계	6,023,624	6,701,593	-677,969
상 수 도	4,189,053	4,439,053	-250,000
주 택 사 업	385,708	729,873	-344,165
의 료 보 호 기 금	537,234	530,398	6,83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0	513,981	-513,981
주민소득자금생활안정기금	589,841	155,862	433,97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291,788	302,426	-10,6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000	30,000	0
	0	0	0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원천)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세입	계	76,138,118	100%	75,285,734	100%	-852,384	70,114,494	100%	68,584,141	100%	1,530,353	6,023,624	100%	6,701,593	100%	-677,969
	지방세	7,064,771	9%	7,064,771	9%	0	7,064,771	10%	7,064,771	10%	0	0	0%	0	0%	0
	세외수입	10,292,530	14%	11,940,974	16%	-1,648,444	6,793,463	10%	6,757,153	10%	36,310	3,499,067	58%	5,183,821	77%	-1,684,754
	경상직세의수입	4,561,098	6%	4,837,451	6%	-276,353	3,731,105	5%	3,723,075	5%	8,030	829,993	14%	1,114,376	17%	-284,383
	입석직세의수입	5,731,432	8%	7,103,523	9%	-1,372,091	3,062,358	4%	3,034,078	4%	28,280	2,669,074	44%	4,069,445	61%	-1,400,371
	지방교부세	25,265,000	33%	24,561,000	33%	704,000	25,265,000	36%	24,561,000	36%	704,000	0	0%	0	0%	0
	지방알여금	6,561,759	9%	6,561,759	9%	0	6,561,759	9%	6,561,759	10%	0	0	0%	0	0%	0
	보조금	23,694,342	31%	22,900,906	30%	793,436	22,169,785	32%	21,383,134	31%	786,651	1,524,557	25%	1,517,772	23%	6,785
	국고보조금	14,456,944	19%	13,867,491	18%	589,453	13,543,599	19%	12,959,561	19%	584,038	913,345	15%	907,930	14%	5,415
	도비보조금	9,237,398	12%	9,033,415	12%	203,983	8,626,186	12%	8,423,573	12%	202,613	611,212	10%	609,842	9%	1,370
	지방채현	3,259,716	4%	2,256,324	3%	1,003,392	2,259,716	3%	2,256,324	3%	3,392	1,000,000	17%	0	0%	1,000,000
	지방채	1,000,000	1%	0	0%	1,000,000	0	0%	0	0%	0	1,000,000	17%	0	0%	1,000,000
	재산매각수입	1,963,643	3%	1,963,643	3%	0	1,963,643	3%	1,963,643	3%	0	0	0%	0	0%	0
	기금및기타	296,073	0%	292,681	0%	3,392	296,073	0%	292,681	0%	3,392	0	0%	0	0%	0
세출	계	76,138,118	100%	75,285,734	100%	852,384	70,114,494	100%	68,584,141	100%	1,530,353	6,023,624	100%	6,701,593	100%	-677,969
	인건비	9,943,614	13%	10,292,097	14%	-348,483	9,931,374	14%	10,279,857	15%	-348,483	12,240	0%	12,240	0%	0
	물건비	8,427,591	11%	8,500,990	11%	-73,399	7,707,096	11%	7,788,270	11%	-81,174	720,495	12%	712,720	11%	7,775
	이건경비	5,049,946	7%	5,325,783	7%	-275,837	4,637,899	7%	4,640,283	7%	-2,384	412,047	7%	685,500	10%	-273,453
	차본지출	50,005,447	66%	48,200,480	64%	1,804,967	46,163,988	66%	44,094,999	64%	2,068,989	3,841,459	64%	4,105,481	61%	-264,022
	융자및출자	592,227	1%	673,219	1%	-80,992	0	0%	0	0%	0	592,227	10%	673,219	10%	-80,992
	보건계원	495,738	1%	546,450	1%	-50,712	127,051	0%	127,051	0%	0	368,687	6%	419,399	6%	-50,712
	내부거래	723,139	1%	823,139	1%	-100,000	723,139	1%	823,139	1%	-100,000	0	0%	0	0%	0
	기타	158,223	0%	165,489	0%	-7,266	113,926	0%	113,923	0%	3	44,297	1%	51,566	1%	-7,269
	예비비	742,193	1%	758,087	1%	-15,894	710,021	1%	716,619	1%	-6,598	32,172	1%	41,468	1%	-9,296

1996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審 查 報 告 書

1995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1월 21일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1995년 11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12. 5 상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12. 15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

###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 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 나. 주요골자

-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718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9억9,300

### . 세입예산중

- 일반회계는 지방세 84억2,400만원, 세외수입 68억3,800  
만원, 지방교부세 285억1,700만원, 양여금 48억1,900만원,  
보조금 193억9,500만원으로 되어있고,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2억2,000만원, 사업외수입 24억800  
만원, 보조금 2억5,000만원임.

### . 세출예산중

-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111억2,500만원, 물건비 86억  
9,400만원, 이전경비 56억4,600만원, 자본지출 399억  
700만원, 보전재원 5억2,7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12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억7,4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인건비 1,400만원, 물건비 8억2,800만원,  
이전경비 6억7,800만원, 자본지출 16억8,200만원,  
융자및출자 3억1,800만원, 보전재원 3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전문위원 신고선 )

가.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9억9,300만원, 특별회계 38억7,800만원을 포함 총 718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되었음.

#### 나. 일반회계

##### ○ 세입부분

- . 총 679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7,200만원(13%)이 증가 되었으며,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임.
- . 부담금 6억원은 해태음료(주) 생수공장 수질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새로운 세원이 되겠으며, 매출액 증가에 대한 추가세입의 전망이 있는 세원임.

##### ○ 세출부분

- . 국도비보조사업중 균비미부담사업으로 수간주사 3억원 감자원종장 진입로포장공사 14억3,500만원등 총 19억 2,500만원이 미부담되어 추가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 되는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 계속비 대상사업중 연부액 미확보된 금액은 반드시 계획대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임.
- . 연차별 계속되는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미하여 계속되는 지역현안사항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특별재원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 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총 7개사업에서 전년대비 18억6,200만원이 감소한 38억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진부상수도 배수지시설에 6억원, 봉평상수도시설 확장에 3억3,000만원등 대부분 상수도 시설관련 사업비 임.

####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평창장학회 규정을 완화하여, 다수인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할 용의는?	· 현재 많은 인원이 희망하고 있으나, 기금사정상 장학금지급을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년 5,000만원씩 적립 10억원을 조성할 예정임으로 이후 검토하겠음.
○ 군정홍보 및 신문구독료 1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예산절감등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신문배포선이 리·반장등 군정 기여자들로 사기진작 차원임을 고려바람.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전체공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 바람.	· 국·도비나 진흥기금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계획된 기간 내 하자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음.
○ 영안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6년도 예산안에 반영치 않은 이유는?	·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워 국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고, 도 단위에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보건복지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공유지 임대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 불합리함. 이를 실수용자로 조정 할 필요가 있음.	· '96년도에 3,500만원을 계상하여, 일제 정리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임.
○ 쓰레기봉투가 견고하지 못해 사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닐 두께등을 규격에 따라 조정, 주민이 사용함에 편리하도록 조정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소규모 하수도신설 및 긴급 보수비 5,000만원은 군수 읍면장등 포괄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장래의 사실을 예상 계상한 것으로 불합리함.</p>	<p>· 긴급히 발생하는 하수도 덮개 파손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민편익제공 차원에서 계상하였음.</p>
<p>○ 무공해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2,100만원과 농촌지도소의 유기농실천시범단지의 8,000만원이 중복 계상된 이유는?</p>	<p>·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중복된 사업이라면 조정하여 시행하겠음.</p>
<p>○ 관내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임도시설 보수사업비 7Km에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p>	<p>·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상지를 조사 우선순위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겠음.</p>
<p>○ 돌배나무를 가로수로함은 성장기간과 개화기등을 감안할때 지역여건상 불부합 된다고 보는데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p>	<p>· 나무의 특성과 조건을 감안 선정하였으며, 나무열매와 꽃이 특징이 있어 비록 성장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나, 가로수로는 적당하다고 생각됨.</p>
<p>○ 봉평 메밀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수확기의 활용기간과 효과성은 무엇인지?</p>	<p>· 콤바인을 구입 벼와 메밀 수확시 시기적으로 적절히 다용도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시행하는 자체특수시책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압축진개차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합리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바, 노후된 일반청소차로 대체구입할 용의는?	. 도와 협의하여 계획상 압축진개차 구입을 일반청소차로 대체구입토록 추진하여, 활용의 극대화를 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읍면장의 활동 경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어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 현재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읍장은 45만원, 면장은 35만원에 별도로 15만원씩 추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을 꾀하겠음
○ 상수도 계량기는 요금징수를 위한 것인데 수혜자에게 설치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함. 전기의 경우 현재 설치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 당초 신설시는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동파등 훼손에 의한 교체시는 징수치 않고 있으며, 상수도 계량기 교체및 수리비 540만원은 무상교체를 위한 것임.
○ 봉평상수도사업은 의회의 예산승인없이 사전 발주한 이유와 입찰 방법은?	.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리 발주토록 하였으며, 발주시기의 시급으로 부득이하게, 사전발주 하였던 것임.
○ 주택용자금 회수중 42세대가 부실채권자라 하는데, 이들에 대한 회수대책은?	. 개인별 회수 상환후 부실채권자는 담보등을 이용 회수에 최선을 기하고 있음.

## 5. 討論要旨

【 없음 】

## 6. 修正案 要旨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5년 12월 11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12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상정)

라. 수 정 이 유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등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함

마. 수정 주요 골자

### 1) 일반회계 세입증

· 일반행정비	1억7,509만8천원
· 사회개발비	1억원
· 경제개발비	1억7,997만5천원등
총	4억5,507만3천원 삭감

### 2) 일반회계 세출

· 일반행정비	4억5,163만3천원
· 사회개발비	344만원등 총 4억5,507만3천원을 증액

3) 특별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5,000만원을  
각각 감액.

## 7.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

##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첨부 : 1996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 1. 예산총칙

### ○ 제1조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총 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계	71,821,147	2,154,634	
일 반 회 계	67,993,329	2,039,799	
특 별 회 계	3,827,818	114,834	

### ○ 제2조 ~ 제7조 : 변동사항 없음

## 2. 예산안 수정내역

### 가.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계			67,993,329	455,073	455,073	67,993,329	
본 청			58,950,177	455,073	447,073	58,942,177	
1000 일 반 행 정			12,592,452	175,098	443,633	12,860,987	
1200 일 반 행 정			12,017,427	175,098	443,633	12,285,962	
		1210 기획관리	5,869,283	100,000	-	5,769,283	
		1213 예산 운영	5,644,780	100,000	-	5,544,780	· 군정수행유공 민간인보상 △ 50,000 · 군정수행유공 민간단체보조 △ 50,000
		1220 공보관리	211,887	20,000	-	191,887	
		1221 공보 관리	211,887	20,000	-	191,887	· 군정홍보 △ 5,600 · 주민계도용신문 구독 △ 14,400
		1240 내 무 행 정	3,354,735	55,098	443,633	3,743,270	
		1241 서무 관리	1,831,886	35,000	-	1,796,886	· 재해부조금 △ 20,000 · 지방행정역점 시책추진여비 보상 △ 15,000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1243 사회 진흥	1,098,337	10,098	443,633	1,531,872	. 전국계전대비주 요도로변공원화 사업인부임 △ 10,098 . 농촌마을길포장 사업 443,633증
		1245 일선 행정 조직 운영	229,644	10,000	-	219,644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10,000
2000 사 회 개 발			17,091,387	100,000	3,440	16,994,827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6,673,666	100,000	3,440	6,577,106	
	2210	보 건	3,074,673	-	1,440	3,076,113	
		2214 의료원 운영	414,344	-	1,440	415,784	. 용급환자수송 여비 1,440 증
	2220 환 경 관 리		3,598,993	100,000	2,000	3,500,993	
		2222 청소 관리	1,125,837	-	2,000	1,127,837	. 환경미화원체육 대회 2,000증
		2223 상하수 관리	1,515,260	100,000	-	1,415,260	. 소규모하수도신 설및간급보수비 △ 50,000 .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 50,000
3000 경 제 개 발 비			27,580,571	179,975	-	27,400,596	
3100 농 산 개 발			12,068,441	79,975	-	11,988,466	
	3110	농정관리	9,827,594	25,000	-	9,802,594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3113 농산 관리	1,346,838	25,000	-	1,321,838	.경운기후방동 설치 Δ25,000
	3120 축수산진흥		465,339	54,975	-	410,364	
		3121 축산 진흥	465,339	54,975	-	410,364	.벚꽃압모니아차 리가스비지원 Δ38,475 .담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Δ16,50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14,999,486	100,000	-	14,899,486	
	3330 건 설 관 리		8,520,201	100,000	-	8,420,201	
		3332 도 로 건 설	8,367,847	100,000	-	8,267,847	.군도보수및정비 Δ 50,000 .농어촌도로정비 Δ 50,000
읍 면			9,043,152	-	8,000	9,035,152	
1000 일 반 행 정			7,070,595	-	8,000	7,062,595	
1200 일 반 행 정			7,070,595	-	8,000	7,062,595	
	1240 내 무 행 정		998,830	-	8,000	990,830	
		1245 일선행 정조직 운영	302,010	-	8,000	294,010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8,000중

## 나. 특별회계

### ○ 세 입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상수도특별회계			2,043,824	50,000	-	1,993,824	
200 사 업 의 수 입			1,134,255	50,000	-	1,084,255	
	240 전 입 금		1,094,255	50,000	-	1,044,255	
		240-01 전입금	1,094,255	50,000	-	1,044,255	·일반회계전입금 △ 50,000

### ○ 세 출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상수도특별회계			2,043,824	50,000	-	1,993,824	
1200 사 업 비			1,569,180	50,000	-	1,519,180	
	1210 사 업 비		1,569,180	50,000	-	1,519,180	
		1211 상수도 사업	1,569,180	50,000	-		·노후관교체공사 △ 50,000



# 1996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의안 28호 안건
----------	--------------

제출년월일 : '95.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7,87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871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4백만원, 지방교부세 3,096백만원, 보조금 4,751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6백만원, 물건비 142백만원, 이전경비 558백만원, 자본지출 7,12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사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3) 지방자치법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6년도 (수정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창군

## 예 산 총 칙

1996 년도 [ 1회추경 ]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71,871,147	2,156,134
일 반 회 계	67,993,329	2,039,799
특 별 회 계	3,877,818	116,334
상수도특별회계	2,043,824	61,314
주택사업특별회계	719,438	21,58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17,301	18,519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3,755	9,412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0,000	1,5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000	1,200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93,500	2,80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 와 같다.
-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74,817천원으로한다.

# 예산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증△감
계	71,871,147	64,000,104	7,871,043
일반회계	67,993,329	60,121,792	7,871,537
특별회계	3,877,818	3,878,312	-494
상수도	2,043,824	2,043,824	0
주택사업	719,438	719,438	0
의료보호기금	617,301	617,795	-494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313,755	313,755	0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50,000	50,000	0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40,000	40,000	0
주차장 설치 및 관리	93,500	93,500	0
	0	0	0
	0	0	0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결별>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비율(%)				예산액	구성비율(%)				예산액	구성비율(%)		예산액
세	계	71,871,147	100%	64,000,104	100%	7,871,043	67,993,329	100%	60,121,792	100%	7,871,537	3,877,818	100%	3,878,312	100%	-494
	지방세	8,424,046	12%	8,424,046	13%	0	8,424,046	12%	8,424,046	14%	0	0	0%	0	0%	0
	세외수입	9,852,644	14%	9,828,991	15%	23,653	6,838,119	10%	6,814,219	11%	23,900	3,014,525	78%	3,014,772	78%	-247
	경상적세의수입	6,051,848	8%	6,051,848	9%	0	4,835,771	7%	4,835,771	8%	0	1,216,077	31%	1,216,077	31%	0
	입시적세의수입	3,800,796	5%	3,777,143	6%	23,653	2,002,348	3%	1,978,448	3%	23,900	1,798,448	46%	1,798,695	46%	-247
	지방교부세	28,517,000	40%	25,421,000	40%	3,096,000	28,517,000	42%	25,421,000	42%	3,096,000	0	0%	0	0%	0
	지방양여금	4,819,000	7%	4,819,000	8%	0	4,819,000	7%	4,819,000	8%	0	0	0%	0	0%	0
	보조금	20,258,457	28%	15,507,067	24%	4,751,390	19,395,164	29%	14,643,527	24%	4,751,637	863,293	22%	863,540	22%	-247
	국고보조금	10,513,264	0%	10,496,389	16%	-10,496,389	9,179,516	14%	9,762,641	16%	16,875	733,748	19%	733,748	19%	0
	도비보조금	9,745,193	14%	5,010,678	8%	4,734,515	9,615,648	14%	4,880,886	8%	4,734,762	129,545	3%	129,792	3%	-247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	계	71,871,147	100%	64,000,104	100%	7,871,043	67,993,329	100%	60,121,792	100%	7,871,537	3,877,818	100%	3,878,312	100%	-494
	인건비	11,139,686	15%	11,145,515	17%	-5,829	11,125,338	16%	11,131,058	19%	-5,720	14,348	0%	14,457	0%	-109
	물건비	9,522,691	13%	9,381,004	15%	141,687	8,694,030	13%	8,551,958	14%	142,072	828,661	21%	829,046	21%	-385
	이건경비	6,323,624	9%	5,765,612	9%	558,012	5,645,428	8%	5,087,416	8%	558,012	678,196	17%	678,196	17%	0
	자본지출	41,588,850	58%	34,468,054	54%	7,120,796	39,906,970	59%	32,786,174	55%	7,120,796	1,681,880	43%	1,681,880	43%	0
	용자및출자	318,129	0%	318,129	0%	0	0	0%	0	0%	0	318,129	8%	318,129	8%	0
	보전계원	833,455	1%	833,455	1%	0	527,051	1%	527,051	1%	0	306,404	8%	306,404	8%	0
	내부거래	1,219,695	2%	1,219,942	2%	-247	1,219,695	2%	1,219,942	2%	-247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925,017	1%	868,393	1%	56,624	874,817	1%	818,193	1%	56,624	50,200	1%	50,200	1%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세항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계	71,871,147	100%	64,000,104	100%	7,871,043	67,993,329	100%	60,121,792	100%	7,871,537	3,877,818	100%	3,878,312	100%	-494
경상예산	22,191,847	31%	21,999,011	34%	192,836	21,943,933	32%	21,750,603	36%	193,330	247,914	6%	248,408	6%	-494
인건비	11,082,912	15%	11,088,741	17%	-5,829	11,068,564	16%	11,074,284	18%	-5,720	14,348	0%	14,457	0%	-109
기준경비	5,039,931	7%	4,997,931	8%	42,000	5,039,931	7%	4,997,931	8%	42,000	0	0%	0	0%	0
관서운영비	514,178	1%	514,178	1%	0	514,178	1%	514,178	1%	0	0	0%	0	0%	0
경상적경비	5,554,826	8%	5,398,161	8%	156,665	5,321,260	8%	5,164,210	9%	157,050	233,566	6%	233,951	6%	-385
사업예산	47,073,844	65%	39,452,261	62%	7,621,583	44,478,740	65%	36,857,157	61%	7,621,583	2,595,104	67%	2,595,104	67%	0
국고보조사업(경상)	2,740,251	4%	2,712,001	4%	28,250	2,142,416	3%	2,114,166	4%	28,250	597,835	15%	597,835	15%	0
국고보조사업(사업)	14,663,633	20%	14,601,133	23%	62,500	14,656,783	22%	14,594,283	24%	62,500	6,850	0%	6,850	0%	0
지방양여금사업	6,552,910	9%	6,552,910	10%	0	6,552,910	10%	6,552,910	11%	0	0	0%	0	0%	0
시·도비보조사업	10,807,073	15%	4,331,222	7%	6,475,851	10,802,273	16%	4,326,422	7%	6,475,851	4,800	0%	4,800	0%	0
자책(신규)사업	11,753,977	16%	10,698,995	17%	1,054,982	9,768,358	14%	8,713,376	14%	1,054,982	1,985,619	51%	1,985,619	51%	0
자책(계속)사업	556,000	1%	556,000	1%	0	556,000	1%	556,000	1%	0	0	0%	0	0%	0
재무상환	1,680,439	2%	1,680,439	3%	-0	695,839	1%	695,839	1%	0	984,600	25%	984,600	25%	0
지방채(국내)상환	1,680,439	2%	1,680,439	3%	0	695,839	1%	695,839	1%	0	984,600	25%	984,600	25%	0
재무부담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등	925,017	1%	868,393	1%	56,624	874,817	1%	818,193	1%	56,624	50,200	1%	50,200	1%	0
예비비	924,817	1%	868,193	1%	56,624	874,817	1%	818,193	1%	56,624	50,000	1%	50,000	1%	0
기타	200	0%	200	0%	0	0	0%	0	0%	0	200	0%	200	0%	0



# 명 시 이 월 조 서

# 명 시 이 월 조 서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장	관	항	세 항	세 서 항	목					
합 계						19 개 사업	8,293,999,000	511,374,090	7,762,524,910	
일반행 경비	일반행 경비	내 무 경 리	사 회 총 합	220 국(사업)	401 - 04 401 - 05	.소하천수해복구 .소교량수해복구 .농포수해복구 .소규모시설복구부대비	2,156,746,000 271,952,000 506,347,000 18,000,000	1,340,000	2,156,746,000 271,952,000 506,347,000 16,660,000	.절대공기부족(2회추경:11.18) . .
사회계 발비	보건및 환경	관 리	정 소 리	250 자치사업	401 - 04 401 - 05	.미암쓰레기내림장조성 .	160,000,000 1,152,000	43,000	160,000,000 1,109,000	.절대공기부족(실시철계지면) .
사회계 발비	사회보 장비	가 정 지 육	가 정 지 육	220 국(사업)	401 - 04 401 - 02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	366,250,000 7,970,000		366,250,000 7,970,000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주택및 지역	도 시 발 달	도시계 획관리	140 경상	208 201 - 01 401 - 04 401 - 05	.봉평도시계획경비 .황계도시계획경비 .봉평.황계도시계획변경신 문공고및유망성곽도착식 .황계7리소교량수해복구	102,000,000 141,000,000 15,000,000 300,000,000 1,000,000	24,500,000 42,300,000	57,400,000 98,700,000 15,000,000 300,000,000 1,000,000	.절대공기부족(3.21-96.3.20) .절대공기부족(6.3-96.6.3) . .절대공기부족(2.3회추경) .
	교육및 문화	문 화 예 술회 관	문화재 관리	210 국(경상)	208	.여강문화재발굴조사	20,000,000		20,000,000	.절대공기부족(2회추경) .
경제계 발비	농수산 개발	농 경 관 리	농업기 반조성	220 국(사업)	401 - 04 401 - 05 401 - 04 401 - 05 401 - 06	.수리시설수해복구 .계산저수지발기반정비 .	802,542,000 5,500,000 811,848,000 10,163,000 182,074,000	423,396,090 5,163,000 14,632,000	802,542,000 5,500,000 388,451,910 5,000,000 167,442,000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동기 240일) ( ) ( )
		농산물 유통		220 국(사업)	401 - 04	.시설최소생산유통지원사업	786,000,000		786,000,000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국토자 원보존	지수및 계획	계획 관리	220 국(사업)	401 - 04 401 - 05	.학천수해복구 .	394,471,000 3,000,000		394,471,000 3,000,000	. (2회추경) .
		건설관 리	도로건 설	220 국(사업)	401 - 04 401 - 05 401 - 04 401 - 05	.운도수해복구 .농어촌도로수해복구 .	768,270,000 4,840,000 271,787,000 1,957,000		768,270,000 4,840,000 271,787,000 1,957,000	. . . .
		산업자 원개발	조립관 리	220 국(사업)	401 - 04 401 - 05 401 - 04	.임도포우회해복구 .산사태수해복구 .	74,951,000 600,000 78,579,000		74,951,000 600,000 78,579,000	. . .
(음면예산)										
일반행 경비	일반행 경비	재 무 경 리	재 산 관 리	250 자치사업	401 - 04	.봉평민사무소지하발수및 하수도설치	10,000,000		10,000,000	.절대공기부족 .
사회계 발비	주택및 지역	지역사 회개발	지 역 개 발	250 자치사업	401 - 04	.유보1리농로포장	20,000,000		20,000,000	.절대공기부족(2회추경) .

# 1996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95.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64,0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0,122백만원과 특별회계 3,878백만원이며,

###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8,424백만원, 세외수입 6,814백만원, 지방교부세 25,421백만원, 양여금 4,819백만원, 보조금 14,644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216백만원, 사업외수입 1,798백만원, 보조금 864백만원입니다.

###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11,131백만원, 물건비 8,552백만원, 이전경비 5,088백만원, 자본지출 32,786백만원, 보전재원 527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1,22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8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14백만원, 물건비 829백만원, 이전경비 678백만원, 자본지출 1,682백만원, 용자 및 출자 318백만원, 보전재원 30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6년도 (당초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 창 군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계	64,000,104	61,653,419	2,346,685
일 반 회 계	60,121,792	55,912,935	4,208,857
특 별 회 계	3,878,312	5,740,484	-1,862,172
상 수 도	2,043,824	4,170,153	-2,126,329
주 택 사 업	719,438	724,873	-5,435
의 료 보 호 기 금	617,795	464,810	152,985
주민소득자금및생활안정기금	313,755	345,148	-31,393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50,000	35,500	14,500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40,000	0	40,000
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	93,500	0	93,500
	0	0	0
	0	0	0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결별>

(단위 : 원천)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계	64,000,104	100%	61,653,419	100%	2,346,685	60,121,792	100%	55,912,935	100%	4,208,857	3,878,312	100%	5,740,484	100%	-1,862,172
세															
지방세	8,424,046	13%	6,462,771	10%	1,961,275	8,424,046	14%	6,462,771	12%	1,961,275	0	0%	0	0%	0
세외수입	9,828,991	15%	10,704,254	17%	-875,263	6,814,219	11%	6,725,370	12%	88,849	3,014,772	78%	3,978,884	69%	-964,112
경상적외수입	6,051,848	9%	4,645,697	8%	1,406,151	4,835,771	8%	3,570,510	6%	1,265,261	1,216,077	31%	1,075,187	19%	140,890
임시적외수입	3,777,143	6%	6,058,557	10%	-2,281,414	1,978,448	3%	3,154,860	6%	-1,176,412	1,798,695	46%	2,903,697	51%	-1,105,002
지방교부세	25,421,000	40%	24,211,000	39%	1,210,000	25,421,000	42%	24,211,000	43%	1,210,000	0	0%	0	0%	0
지방양여금	4,819,000	8%	4,717,751	8%	101,249	4,819,000	8%	4,717,751	8%	101,249	0	0%	0	0%	0
보조금	15,507,067	24%	15,557,643	25%	-50,576	14,643,527	24%	13,796,043	25%	847,484	863,540	22%	1,761,600	31%	-898,060
국고보조금		0%	9,561,360	16%	-9,561,360	9,762,641	16%	8,198,368	15%	1,564,273	733,748	19%	1,362,992	24%	-629,244
도비보조금	5,010,678	8%	5,996,283	10%	-985,605	4,880,886	8%	5,597,675	10%	-716,789	129,792	3%	398,608	7%	-268,816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															
계	64,000,104	100%	61,653,419	100%	2,346,685	60,121,792	100%	55,912,935	100%	4,208,857	3,878,312	100%	5,740,484	100%	-1,862,172
인건비	11,145,515	17%	10,778,488	17%	367,027	11,131,058	19%	10,766,248	19%	364,810	14,457	0%	12,240	0%	2,217
물건비	9,381,004	15%	7,927,844	13%	1,453,160	8,551,958	14%	7,288,066	13%	1,263,892	829,046	21%	639,778	11%	189,268
이권경비	5,765,612	9%	5,348,575	9%	417,037	5,087,416	8%	4,618,075	8%	469,341	678,196	17%	730,500	13%	-52,304
자본지출	34,468,054	54%	35,513,934	58%	-1,045,880	32,786,174	55%	31,795,663	57%	990,511	1,681,880	43%	3,718,271	65%	-2,036,391
용자및출자	318,129	0%	349,724	1%	-31,595	0	0%	0	0%	0	318,129	8%	349,724	6%	-31,595
보건계원	833,455	1%	416,872	1%	416,583	527,051	1%	127,051	0%	400,000	306,404	8%	289,821	5%	16,583
내부거래	1,219,942	2%	435,201	1%	784,741	1,219,942	2%	435,201	1%	784,741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868,393	1%	882,781	1%	-14,388	818,193	1%	882,631	2%	-64,438	50,200	1%	150	0%	50,050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구성비율(%)	예산액				구성비율(%)	예산액				구성비율(%)	예산액	
계	64,000,104	100%	61,653,419	100%	2,346,685	60,121,792	100%	55,912,935	100%	4,208,857	3,878,312	100%	5,740,484	100%	-1,862,172
경상예산	21,999,011	34%	20,175,551	33%	1,823,460	21,750,603	36%	19,973,983	36%	1,776,620	248,408	6%	201,568	4%	46,840
인건비	11,058,741	17%	10,729,120	17%	359,621	11,074,284	18%	10,716,880	19%	357,404	14,457	0%	12,240	0%	2,217
기준경비	4,997,931	8%	3,724,177	6%	1,273,754	4,997,931	8%	3,724,177	7%	1,273,754	0	0%	0	0%	0
권선운영비	514,178	1%	502,622	1%	11,556	514,178	1%	502,622	1%	11,556	0	0%	0	0%	0
경상목적비	5,398,161	8%	5,219,632	8%	178,529	5,164,210	9%	5,030,304	9%	133,906	233,951	6%	189,328	3%	44,623
사업예산	39,452,261	62%	39,254,315	64%	197,946	36,857,157	61%	34,735,870	62%	2,121,287	2,595,104	67%	4,518,445	79%	-1,923,341
국고보조사업(경상)	2,712,001	4%	2,330,680	4%	381,321	2,114,166	4%	1,882,630	3%	231,536	597,835	15%	448,050	8%	149,785
국고보조사업(사업)	14,601,133	23%	12,301,577	20%	2,299,556	14,594,283	24%	12,295,887	22%	2,298,396	6,850	0%	5,690	0%	1,160
지방양여금사업	6,552,910	10%	6,413,954	10%	138,956	6,552,910	11%	6,413,954	11%	138,956	0	0%	0	0%	0
시·도비보조사업	4,331,222	7%	5,191,217	8%	-859,995	4,326,422	7%	5,186,417	9%	-859,995	4,800	0%	4,800	0%	0
각계(신규)사업	10,698,995	17%	12,213,887	20%	-1,514,892	8,713,376	14%	8,153,982	15%	559,394	1,985,619	51%	4,059,905	71%	-2,074,286
각계(계속)사업	556,000	1%	803,000	1%	-247,000	556,000	1%	803,000	1%	-247,000	0	0%	0	0%	0
세무상환	1,680,439	3%	1,320,922	2%	359,517	695,839	1%	300,451	1%	395,388	984,600	25%	1,020,471	18%	-35,871
지방채(국내)상환	1,680,439	3%	1,320,772	2%	359,667	695,839	1%	300,451	1%	395,388	984,600	25%	1,020,321	18%	-35,721
세무부담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150	0%	-150	0	0%	0	0%	0	0	0%	150	0%	-150
차관(해외)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등	868,393	1%	902,631	1%	-34,238	818,193	1%	902,631	2%	-84,438	50,200	1%	0	0%	50,200
예비비	868,193	1%	882,631	1%	-14,438	818,193	1%	882,631	2%	-64,438	50,000	1%	0	0%	50,000
기타	200	0%	20,000	0%	-19,800	0	0%	20,000	0%	-20,000	200	0%	0	0%	200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 본예산 ] ○ 세입 (장,관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60,121,792	100.0	55,912,935	100.0	4,208,857
세	지방세수입	8,424,046	14.0	6,462,771	11.6	1,961,275
	세외수입	6,814,219	11.3	6,725,370	12.0	88,849
	경상적제외수입	4,835,771	8.0	3,570,510	6.4	1,265,261
	임시적세외수입	1,978,448	3.3	3,154,860	5.6	△1,176,412
	지방교부세	25,421,000	42.3	24,211,000	43.3	1,210,000
	지방교부세	25,421,000	42.3	24,211,000	43.3	1,210,000
	지방양여금	4,819,000	8.0	4,717,751	8.4	101,249
	지방양여금	4,819,000	8.0	4,717,751	8.4	101,249
	조정교부금	0		0		0
	조정교부금	0		0		0
	보조금	14,643,527	24.4	13,796,043	24.7	847,484
	국고보조금	9,762,641	16.2	8,198,368	14.7	1,564,273
	도비보조금	4,880,886	8.1	5,597,675	10.0	△716,789
	지방채	0		0		0
입	국내차입금	0		0		0
	국외차입금	0		0		0
	융자금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 본예산 ] ○ 세 출 (세세항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60,121,792	100.0	55,912,935	100.0	4,208,857
세	경상예산	21,750,603	36.2	19,973,983	35.7	1,776,620
	인건비	11,074,284	18.4	10,716,880	19.2	357,404
	기준경비	4,997,931	8.3	3,724,177	6.7	1,273,754
	관서운영비	514,178	.9	502,622	.9	11,556
	경상적경비	5,164,210	8.6	5,030,304	9.0	133,906
	사업예산	36,857,157	61.3	34,735,870	62.1	2,121,287
	국고보조사업(경상)	2,114,166	3.5	1,882,630	3.4	231,536
	국고보조사업(사업)	14,594,283	24.3	12,295,887	22.0	2,298,396
	지방양여금사업	6,552,910	10.9	6,413,954	11.5	138,956
	시·도비보조사업	4,326,422	7.2	5,186,417	9.3	△859,995
	자체(신규)사업	8,713,376	14.5	8,153,982	14.6	559,394
	자체(계속)사업	556,000	.9	803,000	1.4	△247,000
	채무상환	695,839	1.2	300,451	.5	395,388
	출	지방채(국내)상환	695,839	1.2	300,451	.5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예비비등		818,193	1.4	902,631	1.6	△84,438
예비비		818,193	1.4	882,631	1.6	△64,438
기타		0		20,000	.0	△20,000

# 국도31호선(장평↔평창간)4차선확포장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48
----------	----

발의년월일 : 1995년 12월 일

발 의 자 : 이경진 의원

외 6인

## 1. 주 문

우리 평창군은 년중 6개월이 동절기인 산간고냉지로서 전체면적의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고냉지채소가 주소득원이며, 자주재원이 24%에 불과한 취약한 군입니다.

영동고속국도 개통이후 급속한 레저산업의 발달로 다소나마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와의 접근거리인 교통망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직근거리에 춘천↔대전간 중앙고속국도와 동해 고속국도 평택↔삼척간 고속국도가 개설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영동고속국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평창남부지역은 도로의 협소와 산간지대의 굴곡을 통과하는 도로망의 악조건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기에 장평↔평창간 국도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구간을 이용한 차량은 1일평균 7,700여대에 이르고 있고 매년 3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영동고속 국도를 우회하는 차량들로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극심하여 국도 31호선의 4차선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 31호선(장평↔평창↔제천)이 4차선화 될시

-현 영동고속국도와 연계한 우회도로로 활용되므로 교통체증(장평↔방림↔횡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영동고속국도와 중앙고속국도를 남북간 직통으로 연결하므로 최소한의 시간대에 강원 동해안지역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영동고속국도의 개통으로 평창 북부지역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반면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평창 남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4차선 확·포장은 군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 전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평↔평창간 국도 31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6만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안이유

영동고속국도와 군청소재지를 잇는 도로망의 미흡으로 기업의 투자 기피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도 31호선 (장평↔평창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므로써, 영동고속국도 교통체증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평창 남·북부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국도 31호선중 장평↔평창'구간을 4차선으로 조기에 확·포장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 건의문

우리평창군은 년중 6개월이 동절기인 산간고냉지로서 전체면적의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고냉지채소가 주소득원이며, 자주재원이 24%에 불과한 취약한 군입니다.

영동고속국도 개통이후 급속한 레저산업의 발달로 다소나마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와의 접근거리인 교통망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직근거리에 춘천↔대구간 중앙고속국도와 동해고속국도, 평택↔삼척간 고속국도가 개설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영동고속국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평창남부지역은 도로의 협소와 산간지대의 굴곡을 통과하는 도로망의 악조건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요인이 되고 있기에 장평↔평창간 국도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구간을 이용한 차량은 1일평균 7,700여대에 이르고 있고, 매년 3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영동고속국도를 우회하는 차량들로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극심하여 국도 31호선의 4차선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31호선(장평↔평창↔제천)이 4차선화 될시  
-현 영동고속국도와 연계한 우회도로로 활용되므로  
교통체증(장평↔방림↔횡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영동고속국도와 중앙고속국도를 남북간 직통으로 연결하므로  
최소한의 시간대에 강원 동해안지역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영동고속국도의 개통으로 평창북부지역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반면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평창 남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4차선화·포장은 군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 분명  
합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 전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평↔평창간 국도 31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주  
실것을 건의하오니 6만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조속히 이  
루어 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95년 12월

평 창 군 의 회 의 원 일동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직 정원으로 되어 있던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계장 정원 6급(지방행정 또는 지방토목) 1인 순증(안 제2조)
- 나. 계장 이외의 직원은 자체 상계조정하는 것과 관련 보건 의료원의 기능10등급(보건) 1인과 농촌지도소 기능10등급(운진) 1인을 감하여 본청의 재난관리계에 일반직7급 2인(지방토목 1인, 지방행정 또는 지방건축 1인)을 증원(안 제2조)
- 다. 산업과의 국가직 양곡관리 특별회계정원 3인을 지방직 정원으로 순증(안 제2조)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18"을 "224"으로 하고 제3호중 "99"를 "97"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1호중 정위3인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청 : 218 인</li> <li>2. 의회사무과 : 11 인</li> <li>3. 직속기관 : 99 인</li> <li>4. 사업소 : 8 인</li> <li>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0 인</li> </ol>	<p>제2조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청 : 224 인</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직속기관 : 97 인</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ol>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1860	선결	근수 김영우	지	
시행일자	1995. 12. 5 (영구)	접	일자 시간 1995. 12. 07	시	
경유		수	번호 12496	결	부근수 박상만
수신	수신처참조	처리과	내무과	재·공	과장 노영익
참조	총무·내무과장	담당자	김영우	계장	김영익
				람	

제목 재난관리 기구·정원승인 통보

※첨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지방 12200~1727('95. 1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별첨과 같이 재난관리 기구·정원을 승인하니
3. 관련 조례·규칙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동조식이 발족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구·정원 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 (01 ~18)

내무과장 선결



기관명	직 위	직 급	정 원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 계			1명
횡성군 (본 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 계			1명
영월군 (본 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 계			1명
<del>영창군</del> (본 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1942	송신일시	1995.12.21
1943	수신일시	1995.12.21
	서명날인	김삼국

"심 맞나는 강원건설"

#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61)51-3320, 행정 2224, 2295 / 담당 함 개 식

문서번호 지방 12200 - 1942  
 시행일자 1995. 12. 21(3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근수	김용욱	지시	
접	일자 시간	1995.12.21	결	부근수 박상방
수	번호	1305	재	과장 김용욱
처리과	배부과		공	계장 이필래
담당자	김삼국		람	

제목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례등 개정

1. 지방 12200 - 1763('94. 12. 30)호로 기 시달한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전환에 따른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96.1.1 지방직 전환대상이 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에 대하여 '95 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조례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기타, 조직개편등과 관련 대통령령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승인·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공포 보고 및 규칙개정안 사전보고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시군별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정원현황 1 부 끝

## 강 원 도 지

### 지방과장전결



수신처 : 더 (01 - 18)

# □ 농림수산부직제(양특) 국가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10등급)		
	계	행정	농업	기능	행정	행정	농업	행정	농업	행정	농업	행정	농업	직업	사용	직업	번호
계	76	43	16	11			16		8	7	20		5	9		2	9
시 계	40	21	8	11			5		3	4	12		1	4		2	9
춘천시	10	3	2	5			1			1	2			1		1	4
원주시	7	5	2				1		1	1	2		1	1			
강릉시	7	5	1	1			1		1		3			1		1	
동해시	7	2		5							2						5
태백시	2	2					1				1						
속초시	1	1									1						
삼척시	6	3	3				1		1	2	1			1			
군 계	36	22	8				11		5	3	8		4	5			
홍천군	4	3	1				1				1		1	1			
횡성군	4	3	1				1		1		1			1			
강원군	4	3	1				1		1		1			1			
평창군	③	③					1		1				1				
정선군	3	2	1				1			1			1				
함백군	3	3					1		1		1						
화천군	3	2	1				1			1			1				
양구군	3	2	1				1				1			1			
인제군	3	3					1		1		1						
고성군	3	2	1				1			1	1						
양양군	3	2	1				1				1			1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최근 대형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정부의 재난관리 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군 본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안 제2조)
- 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사무분장 규정(안 제18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수립
2.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3. 민방공계획 수립
4.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6. 비상대책업무
7.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9.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0.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11. 대형사고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2. 병무업무
13. 공익근무요원 관리
14. 그 밖에 민방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실과의 설치) 평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지역경제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u>민방위과</u>를 둔다.</p>	<p>제2조 ----- ----- ----- ----- ----- ----- <u>--민방위재난관리과-----</u></p>
<p>제18조 (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방위 계획수립 (소방계획 포함)</u></li> <li>2. <u>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u></li> <li>3. <u>민방공계획 수립</u></li> <li>4. <u>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소방시설 포함)</u></li> <li>5. <u>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u></li> <li>6. <u>비상대책업무</u></li> <li>7. <u>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u></li> <li>8. <u>병부업무</u></li> <li>9. <u>공익근무요원 관리</u></li> <li>10. <u>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u></li> </ol>	<p>제18조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방위 계획수립</u></li> <li>2. <u>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u></li> <li>3. <u>민방공계획 수립</u></li> <li>4. <u>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u></li> <li>5. <u>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u></li> <li>6. <u>비상대책업무</u></li> <li>7. <u>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u></li> <li>8. <u>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u></li> <li>9. <u>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u></li> <li>10. <u>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u></li> <li>11. <u>대형사고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u></li> <li>12. <u>병부업무</u></li> <li>13. <u>공익근무요원 관리</u></li> <li>14. <u>그 밖에 민방위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u></li> </ol>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 (0361) 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1727

시행일자 1995. 11. 10 (3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근수	조용욱	지	
접	일자	1995. 11. 10	시	
수	번호	11550	결	부근수 박삼만
처	리	과	재	과장 기영
담	당	자	공	계장 개일재
			람	

## 제목 시·군 재난관리기구 보강계획 통보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한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계획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등 조직이 발족 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 조치를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계획 1부. 끝

# 강 원 도 지 사

수신처 : 더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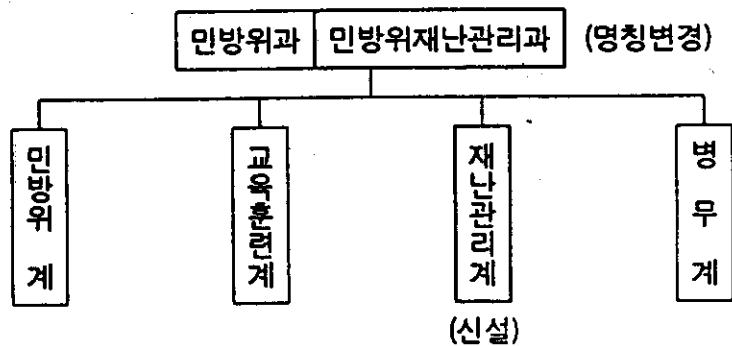
# 災難管理 機構 · 人力 補強計劃

○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 계획임

## □ 補強 計劃

### 【 기 구 】

-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
- 「재난관리계」 신설



- ※ 방재계의 재난관리기구 통합은 내무부에서 재검토 계획임
- ※ 병무계의 존치 또는 타과 이관여부는 자체 판단 적의조치

### 【 인 력 】

- 정원 : 4명 (순증 1 ; 6급. 상계조정 3 ; 7급이하)
  - 과 장 : 직렬조정 (행정 5급 ⇒ 행정·토목5급)
  - 계 장 : 행정·토목6급
  - 직 원 : 가급적 기술직으로 배치 ( 7급 2명, 8급 1명)

## □ 主要 機能

-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 시·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량,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점검·지도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지도등에 관한 사항

## □ 行政 事項

- 재난관리 정원승인 신청:'95.11.13한 (도에서 일괄취합 신청)  
( 신청서식 )

단 체 명	재난관리인력 보강계획			비 고
	직 렬	직 급	인 원	
계			4명	

- 기구·인력 승인후 관련조례·규칙등 정비  
⇒ 지방재난관리 조직 조기 발족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의안 39 호 관련
----------	---------------

발의년월일 : 1995년 12월 일

발 의 자 : 김 종 영 의원의6인

## □ 수정이유

1995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동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95년 12월 22일 원안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쥘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나, 쥘형자동차가 배기량이 높아야만 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고 일시에 세액을 대폭인상함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코자 소폭으로 인상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중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원안에 추가시키고자 함.

## □ 수정주요골자

- 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의2)
- 나.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3조)
- 다. 쥘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씨씨당 세액을 배기량별로 영업용은 2원, 비영업용은 20~45원 인상함(안 제17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자 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17조중 씨씨당 세액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업 무 용
2,000씨씨 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230원

[ 별표 ] 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p>	<p>안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_____ 장애인</p> <p>(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 1급 내지 6급</p> <p>에 해당하는 자가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신설&gt;</p>	<p>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p>	<p>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6. (생략)</p> <p>&lt;신설&gt;</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u>영구임대주택</u>(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p>		<p>제7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hr/> <hr/> <hr/> <hr/> <hr/> <hr/> <hr/> <hr/> <p>1.~6.(현행과 같음)</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hr/>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생략)</p> <p>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p> <p>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생략)</p> <p>②(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_____</p> <p>지정을 받은 자 와 _____ _____</p> <p>_____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자</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_____ _____</p> <p>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7조(꺠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꺠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p>제17조(꺠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p>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원</td> </tr> <tr> <td>1,0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원</td> </tr> <tr> <td>2,0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5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body> </table>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원</td> </tr> <tr> <td>2,5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원</td> </tr> <tr> <td>3,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원</td> </tr> </tbody> </table>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 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230원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 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230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1996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p> <p>②(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 지 적용한다.</p> <p>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p> <p>&lt;삭 제&gt;</p>
[별표]			
급 수	상이등급분류표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삭 제>
6 급 (복합 호수 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 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향후 3년간('96~'98)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11.17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군세조례중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함.(안 제15조)
- 나.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 포함)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 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부칙 제2조)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세율)①생략 _____            _____            _____</p> <p>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u>7.5</u></p> <p>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u>7.5</u></p> <p>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u>7.5</u></p>	<p>제15조(세율)①현행과 같음 _____            _____            _____</p> <p>② _____</p> <p>1. _____ <u>10</u></p> <p>2. _____ <u>10</u></p> <p>3. _____ <u>10</u></p>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 평창군세조례 제15조 제2항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가 현재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에게만 한정 적용하고 있는바, 면제대상을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 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안 제4조)
- 나. 면제조건으로서 본인명의 등록 뿐만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포함(안 제4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증 지체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                      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                      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                      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                      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 _____                      _____                      _____                      _____</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 평창군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평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30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1977. 9. 26 일자 강원도 고시 제157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된 봉평도시계획에 있어 무질서한 시가지의 정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함.

## 2. 주요골자

- 길정조서 및 도면첨부

가. 도시계획구역 면적 : 1,862,000㎡ → 1,862,000㎡ (변동없음)

나.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62,000	-	1,862,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27,000	35,110	362,110	19.4
	일반주거지역	327,000	9,910	336,910	18.0
	준주거지역	-	25,200	25,200	1.4
일 반 상 업 지 역		41,000	24,800	65,800	3.6
녹지 지역	소 계	1,494,000	△ 59,910	1,434,090	77.0
	자연녹지지역	1,016,000	108,500	1,124,500	60.4
	생산녹지지역	478,000	△ 168,410	309,590	16.6

다. 도 로

- 대 로 : 1개노선 1,770 m → 1,770 m
- 중 로 : 4개노선 4,005 m → 4,005 m
- 소 로 : 30개노선 6,839 m → 7,116 m

라. 공 원

- 근린공원 1개소 235,000㎡ → 2개소 237,900㎡ (가산공원 신설)
- 어린이공원 - → 1개소 1,500㎡ (신설)

마. 학 교

- 봉평국민학교 - → 1개소 9,750㎡ (신설)
- 봉평중고교 - → 1개소 15,100㎡ (신설)

### 3. 관계 법령

-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도 같다.  
(도지사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 위임)

### 4. 참고 사항

-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기 간 : '95. 11. 1 ~ '95. 11. 18
  - 방 법 : 신문공고 2회(도민일보, 시대일보)
- 주민공청회
  - 일 시 : '95. 11. 7 (13:00)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2층(예식장)
  - 참 석 : 군의원 김두경외 29명
  - 의 건 : 없음



# 영·평·정 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95. 7. 1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간의 공동해결 과제의 부각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등 입지적여건이 같은 인접지역간의 합리적 행정수행을 위한 광역행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점차 중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군의 인접 지역인 영·평·정 3개군이 지역의 공동과제의 합리적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하고자 하는것임.

##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 명칭은 영·평·정 행정협의회라 하고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등 3개 군으로 구성함. (안제1조, 제3조)
- 나.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되며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함. (안제4조)
- 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회장은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순으로 함.(안제5조)

- 라. 협의회는 각군간 주민여론·여망 사항등 광역 개발 및 광역 행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함. (안제7조)
- 마. 협의회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함. (안제8조)
- 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으로 대처함. (안제13조)
- 사.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정리하고 경비는 구성 자치단체의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함. (안제14조)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따로붙임

# 영·평·정 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명칭) 본행정협의회는 영·평·정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위치) 본 행정협의회는 회장소속 군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3개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되며,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간사는 회장으로 선임된 군의 기획실장으로 한다.

④ 서기는 각군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순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유고시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및 협의사항)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결정한다.

- ① 각 군간 주민여론·여망사항의 공동해결
- ② 지역 특산품개발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
- ③ 농공단지, 특화단지등 소득사업 유치 및 운영의 유기적 협조
- ④ 환경오염방지 및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및 개발계획추진 사전협의
- ⑤ 각 지역내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⑥ 주요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포장등에 관한사항
- ⑦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및 시기)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각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회의장소 및 주관은 3개군이 윤번제로 실시한다.

제9조(회의 및 표결) ① 위원은 협의안을 10일전에 회장에게 구두 협의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은 토의와 표결권이 부여되며,

③ 표결은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10조(배석위원) ① 배석위원은 각군 기획실장과 상정, 협의안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본 회의시 정위원에게 보고 설명한다.

② 배석위원은 토의에는 배석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1조(실무 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각군 기획실장으로 하고 협의할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회의록은 회의개최 군 서기가 기록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토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회장이 소재하는 군에 인계 보관 관리토록 한다.

제13조(결의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 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이 이행하며,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14조(개정) ①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회의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자치단체의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개발사업 시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안전의 협의시 결정한다.

제15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필요시 개정하되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부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1996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 지방자치법

### 제2절 행정협의회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포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4조(협회의의 규약) 협회의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협회의의 명칭
2. 협회의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회의가 처리하는 사무
4. 협회의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회의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5조(협회의의 자료제출 요구등) 협회의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협회사항의 조정) ① 협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3. 16)



제147조(협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 3. 16)

②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94. 3. 1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②항 → ③항으로, '94. 3. 16 )

제148조(협회의 계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